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699호 2006. 5. 11.(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규 칙]

제348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348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제348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제348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제3489호 보건환경에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제3490호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4
 제3491호 119구급대및구조대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4
 제3492호 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6

[입법예고]

제2006-731호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제2006-732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7
 제2006-73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8
 제2006-73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8
 제2006-74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제2006-748호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고 시

제2006-166호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지정 51
 제2006-167호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55
 제2006-168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58
 제2006-169호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정정 59
 제2006-170호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60
 제2006-17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 61
 제2006-1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61
 제2006-173호, 1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변경결정(폐지) 62
 제2006-17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64
 제2006-176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65
 제2006-17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 실시계획 67
 제2006-17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68
 제2006-179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77

◆공 고

제2006-699호 기부금품 모집허가 89
 제2006-700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안 89
 제2006-701호 2006년도 지하철9호선관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91
 제2006-702호 2006년도 제9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92
 제2006-704호, 705호, 7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94
 제2006-71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95
 제2006-7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96
 제2006-7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97
 제2006-715호 박물관 신규 등록 97

제2006-71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97
제2006-720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98
제2006-723호, 724호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반환청구 안내	99
제2006-727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112
제2006-73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	112
제2006-737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115
제2006-739호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116
제2006-74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16

◆구고시

제2006- 4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동대문구)	118
제2006- 43호	도시계획시설(제2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동대문구)	118
제2006- 1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도봉구)	120
제2006- 14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 인가(노원구)	121
제2006- 25호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은평구)	126
제2006- 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작성(서대문구)	126
제2006- 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대문구)	127
제2006- 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구로구)	129
제2006- 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서초구)	130
제2006- 21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강남구)	130
제2006- 22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강남구)	131

◆구공고

제2006-215호	가회정비구역 공사완료 공람(정정)(종로구)	133
제2006-281호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성동구)	133
제2006-27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서대문구)	135
제2006-2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서초구)	135

◆사업소공고

제2006- 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양천소방서)	137
제2006- 15호	소방시설업등록(구로소방서)	137
제2006- 6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영등포소방서)	137
제2006- 20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137

짜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총계란중 총계 “16,315”를 “16,331”로, 본청 “3,301”을 “3,302”로, 의회사무처 “232”을 “233”로, 직속기관 “6,244”를 “6,258”로 하고, 일반직 계란중 총계 “6,472”를 “6,476”로, 본청 “2,502”를 “2,503”로, 의회사무처 “129”를 “130”로, 사업소 “3,522”를 “3,524”로 하며, 2·3급 소계란중 본청 “13”을 “14”로 하고, 사업소 “4”를 “3”로 하며, 이사관또는부이사관란중 총계 “7”을 “15”하고, 본청 “6”을 “11”로 하며, 사업소에 “3”을 추가하며,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또는시설부이사관”란을 삭제하고, “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또는공업부이사관”란을 삭제하고, “이사관·시설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또는농림부이사관”란을 삭제하며, “이사관·환경이사관·부이사관또는환경부이사관”란을 삭제하며, 3급 소계란중 본청 “10”을 “9”로, 사업소 “8”을 “9”로 하고, 부이사관란중 총계 “4”를 “18”로, 본청 “2”를 “9”로, 사업소 “1”을 “8”로 하며, “의무부이사관”란 및 “부이사관또는시설부이사관”란, “부이사관또는농림부이사관”란, “부

이사관·농림부이사관또는축산부이사관”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또는공업부이사관”란, “공업부이사관또는시설부이사관”란을 삭제하고,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또는별정(3급상당)”란을 “부이사관또는별정(3급상당)”로 하며, 3·4급 “행정”란을 “부이사관또는서기관”으로, “시설”란을 “부이사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하고, 4급 소계란중 총계 “158”을 “160”로, 본청 “82”를 “83”로, 사업소 “60”을 “61”로 하며, “행정”란을 “서기관”으로 하고, 총계 “61”을 “62”로, 본청 “40”을 “41”로 하며, “공업”란을 “공업서기관”으로 하며, “임업”란을 “농림수산서기관”으로 하고, 총계 “3”을 “4”로, 사업소 “2”를 “3”로 하며, “수의”란을 삭제하며, “약무”란을 “보건의무서기관”으로 하고, 총계 “1”을 “3”로, 본청에 “1”을 추가하고, 사업소 “1”을 “2”로 하며, “간호”란을 삭제하고, “시설”란을 “시설서기관”으로 하며, 총계 “22”를 “23”로, 사업소 “15”를 “16”로 하고, “행정또는공업”란을 “서기관또는공업서기관”로 하며, “행정또는임업”란을 “서기관또는농림수산서기관”으로, “행정또는보건”란을 “서기관또는보건의무서기관”으로, “행정또는환경”란을 “서기관또는환경서기관”으로, “행정또는시설”란을 “서기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행정또는통신”란을 “서기관또는통신서기관”으로, “행정또는별정(4급상당)”란을 “서기관또는별정(4급상당)”으로, “행정·임업또는환경”란을 “서기관·농림수산서기관또는환경서기관”으로, “행정·임업또는별정(4급상당)”란을 “서기관·농림수산서기관또는별정(4급상당)”으로, “행정·시설또는공업”란을 “서기관·공업서기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행정·시설·공업또는환경”란을 “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행정·통신또는별정(4급상당)”란을 “서기관·통신서기관또는별정(4급상당)”으로,

“행정·공업·임업또는시설(교육정원)”란을 “서기관·공업서기관·농림수산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교육정원)”으로, “행정·농업·축산또는수의”란을 “서기관또는농림수산서기관”으로, “환경또는공업”란을 “공업서기관또는환경서기관”으로, “공업또는시설”란을 “공업서기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공업·시설또는환경”란을 “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공업·시설·보건또는환경”란을 “공업서기관·보건의무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공업·보건또는환경”란을 “공업서기관·보건의무서기관또는환경서기관”으로, “공업또는통신”란을 “공업서기관또는통신서기관”으로, “임업또는시설”란을 “농림수산서기관또는시설서기관”으로 하고, “의무또는보건”란을 삭제하며, “연구관(가축위생)또는수의”란을 “연구관(가축위생)또는농림수산서기관”으로, “연구관(공업·보건·환경) 또는계약”란을 “연구관(공업·보건·환경) 또는계약”으로 하고, 4·5급란중 “행정”란을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으로, “건축”란을 “시설서기관또는건축사무관”으로, “토목”란을 “시설서기관또는토목사무관”으로 하며, 6급 기계란의 총계 “66”을 “65”로, 본청 “25”를 “24”로, 토목란의 총계 “186”을 “187”로, 본청 “63”을 “64”로 하고, 7급 소계란중 총계 “2,237”을 “2,239”로, 의회사무처 “28”을 “30”로 하며, 행정란의 총계 “706”을 “709”로, 본청 “437”을 “438”로, 의회사무처 “22”를 “24”로, 전산란의 총계 “114”를 “115”로, 본청 “82”를 “83”로, 기계란의 총계 “105”를 “104”로, 본청란의 “15”를 “14”로, 토목란의 총계 “243”을 “242”로, 본청 “58”을 “57”로 하고, 8급 소계란중 의회사무처 “5”를 “4”로, 사업소 “688”을 “689”로, 행정란의 의회사무처 “4”를 “3”로, 사업소 “82”를 “83”로 하며, 교육공무원 계란중 총계 “400”을 “414”로, 직

속기관 “400”을 “414”로, 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 전임강사란의 총계 “337”을 “351”로, 직속기관 “337”을 “351”로 하고, 기능직 계란중 총계 “3,761”을 “3,759”로, 사업소 “2,870”을 “2,868”로 하며, 기능 9급 전기원란의 총계 “148”을 “149”로, 사업소 “136”을 “137”로 하고, 기계원 기계란의 총계 “256”을 “254”로, 본청 “14”를 “13”로, 사업소 “236”을 “235”로 하며, 운전원란의 총계 “114”를 “115”로, 본청 “32”를 “33”로 하고, 기능10급 소계란의 총계 “736”을 “734”로, 사업소 “507”을 “505”로 하며, 기계원 기계란의 총계 “187”을 “185”로, 사업소 “152”를 “150”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정원중 청계천관광 지원업무 추진인력1명(행정4급)은 2007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과학대학으로서의 시립대학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직공무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정원 14명 및 지하철건설본부 등 조직보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마곡 R&D시티 조성 관련 인력지원 등 행정수요 변동을 반영하여 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11명)하려는 것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통합과 관련하여 국장, 과장 등의 변경된 직급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기술심사담당관”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계천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중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서기관”으로, “지방의무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사무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축산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청소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대기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

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보건의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푸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연생태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제2항중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을 “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중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및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및 토지관리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 및 시설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② 건설기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동조제7항제8호중 “재해대책본부”를 “재난

<p>안전대책본부(여름철 풍수해 분야)로 하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5. 청계천(청계광장 포함)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주택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거정비과장·건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p> <p>제25조제2항중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p> <p>제44조제2항중 “지방수의서기관”을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한다.</p> <p>제67조중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p> <p>제68조제2항중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을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p> <p>제70조중 “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p> <p>제77조중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p> <p>제78조중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p> <p>제80조제1항중 “지방임업서기관”을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한다.</p> <p>제81조제1항중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p>	<p>공업서기관”을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p> <p>제82조중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p> <p>제83조제1항중 “건설부·설비부 및 건축부”를 “건설1부·건설2부·건축부 및 설비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관리부장·공무부장 및 건설1부장·건설2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p> <p>제84조제2호 및 동조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호 “신교통시스템 노선설계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교통시스템건설 설계(토목 및 궤도) 총괄”로 한다.</p> <p>2.지하철건설 설계(토목 및 궤도) 총괄 3.수탁공사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p> <p>제84조제10호·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9.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 공사 및 감리 발주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p> <p>제85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6조(건설1부) 건설1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철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총괄 3. 공사장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 총괄 4. 제설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5. 토지 및 물건 등 보상업무 총괄 6. 지하철 계측업무 총괄
--	--

<p>7. 2기 지하철 사후관리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건설2부) 건설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2. 수방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3. 피해건물 보수·보상에 관한 업무 총괄 4.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5. 시공·감리에 대한 평가 및 부실벌점 업무 총괄 6. 지하철건설공사 제도 시공 및 감리 관리 7. 승강편의시설 사후관리(토목분야) 8. 2기 지하철 사후관리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건축부)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 정거장 Master design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2. 지하철 정거장 및 환기구 등 색채·조형물 계획 3.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건축분야) 4. 지하철건설 건축 시공관리 5. 지하철 정거장 방재계획 업무 6. 지하철 정거장 안내짜인 계획 7. 지하철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설계 및 건축·토목 시공관리 8. 기존 지하철 개량부분 사후관리 제88조(설비부)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2. 정거장 전기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3. 차량 수급계획·설계 및 제작관리</p>	<p>4. 차량기지 검수설비 계획 및 시공관리 5. 기계설비(냉방, 환기, 공기정화,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승강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6. 통신 및 역무자동화설비 계획·설계·시공관리 7. 신호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8. 종합사령실 계획·설계 및 시공관리 9. 승강편의시설(전기,기계,통신) 설계 및 시공관리 10. 본부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11. 신교통시스템 설계 및 시공관리 12.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설비분야) 제91조제1항중 “지방의무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약제부장은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간호부장은 지방간호서기관을 “약제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보건사무서기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05조 및 제107조중 “지방임업서기관”을 각각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축산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중 “지방임업서기관”을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지방수의서기관”을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한다. 제116조중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을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132조중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농림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133조중 “지방임업서기관”을 “지방농림수</p>
--	--

산서기관”으로 한다.
제138조중 “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지방공업서기관·지방보건의무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9호선 등 기존 지하철건설사업의 본격화 및 우이~신설선 등 신규 지하철 건설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본부에 건설2부 신설 및 일부 부간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지하철건설 추진 조직을 보강하고, 청계천 관광 지원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의 통합 수행 등 소관부서별 일부업무를 조정함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통합과 관련하여 국장, 과장 등의 변경된 직급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관국의 문화국(문화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문화국 (문화과)	5. 문화관광부소관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 (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관련 지도·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제9호)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제9호)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제9호)	구청장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 중 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제외한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관련 지도·감독,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348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제9조 별표2의 내용란중 “국가유공자”를 각각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서울특별시규칙 제3461호(2005.12.2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납골당 관리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는 납골당 사용허가 또는 재사용허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납골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규칙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납골당관리비는 지체 없이 환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모든 납골당 사용자에게 납골당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2006

년 1월 1일 이후에 납골당 사용허가 또는 재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그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3489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목 “(검사·시험의뢰 등)”을 “(검사·시험의뢰 및 교육신청 등)”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①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시험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교육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신청서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한 자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

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1. 검사·시험수수료 : 별표 2
 - 2.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수수료 : 별표 3
 - 3.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비 : 별표 4
- ②조례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 및 신청자가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 ③원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수수료 등을 과다 징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조례 제4조에서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검사·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 ⑤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검사·시험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간이속성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의뢰하는 것에 한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육신청서 접수 및 수료증 수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5조중 “검사·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를 “검사·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수수료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고,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소란중 “구, 동, 번지, 호 등”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제3조제1항관련”을 “제3조제2항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업체 및 소재지”란을 “업체 및 소재지(치료채취장소)”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 접수된 검사의뢰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검사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정하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검사수수료를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요령 및 불가상승을 등을 반영하여 동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389개 세부항목별로 정함(제3조제1항, 별표 2, 별표 3).
 - 나. 검사항목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검사항목별 처리기간 및 소요시료량 신설 및 통·폐합(제2조, 별표 1).
 - 다.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표 4).

[별표 1]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제2조 관련)

1. 미생물분야

검사·시험종별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가. 미생물학적검사		
(1) 일반세균	5일	가. 액체 : 200ml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나. 고체 : 200g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2) 유산균	5일	
(3) 대장균군(정성, 정량)	10일	
(4) 대장균	10일	
(5) 식중독균	20일	
(6) 레지오넬라균	12일	가. 냉각담수 2ℓ이상
(7) 기타미생물검사	20일	가. 액체 : 200ml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나. 고체 : 200g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가. 일반의약품		
(1) 일반검사	15일	가. 내용고형제 (1) 과립제(1회용) 100포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2) 산제(1회용) 300포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3) 분말시럽제 300g (4) 정제(질정포함) 100정 (5) 캡셀제(연질캡셀포함) 100캡셀 (6) 트로키제 100정 (7) 환제 100환
가 무균시험포함시	20일	
나 미생물허용시험포함시	20일	
다 동물실험포함시	20일	
라 엔도톡신시험포함시	20일	
마 세포독성시험포함시	40일	
바 항생제 역가시험포함시	30일	

2.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분야

검사·시험종별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나. 수입의약품		
(1) 단일성분	30일	나. 내용액제 (1) 액제(1회용) 40병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7개이상) (2) 현탁제(1회용) 100포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3) 시럽제(1회용) 40병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4) 흡입제 50개
가 동물실험포함시	50일	
(2) 복합성분	50일	
다. 외용고형제 (1) 좌제(항문, 질 등) 100개 (2) 연고제 20개 (3) 크림제 20개 (4) 산제 20개		

검 사 · 시 험 중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2) 복합성분	50일	(5) 액제 20병 (6) 에어로졸제 15통 (7) 로션제 20병 (8) 경고제(고약류) 40개 (9) 경고제(파스류) 45개 라. 안과용제 (1) 안연고제 20개 (2) 점안제 30개 마. 주사제 (1) 1ml미만 25병 (2) 1ml~20ml미만 25병 (3) 20ml~100ml미만 20병 (4) 100ml이상 15병 바. 생약제제 (1) 과립제 500g 포장단위 1개이상 (분할용인 경우 내용고형제에 준함) (2) 산제(1회용) 100포 (분할용인 경우 내용고형제에 준함) (3) 시럽제(100ml이하) 40병 (분할용인 경우 내용고형제에 준함) (4) 톨크제 40병 (5) 환제 (가) 0.3g이상 50환 (나) 0.1g~0.3g미만 100환 (다) 0.1g미만 100환이상 ※ 단, ① 무균시험, 미생물허용시험 및 엔도독신시험시 포장 단위 3개이상 추가 ② 수입의약품수거기간(1~3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다. 원료의약품	15일	가. 50g이상
라. 한약재		
(1) 생약 일성분(정성, 정량)	15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2) 한약재 성분규격검사	15일	가. 1품목당 500g이상
(3) 중금속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4) 표백제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5) 잔류농약(다성분 및 일성분)	2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마. 일반화장품	15일	가. 화장품 4개 - 단, 5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추가 - 내용량만 실험하는 항목의 경우 3개
바.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30일	가.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8개
사. 기능성화장품		나. 기능성화장품 5개 - 단 2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 추가

3.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일반검사	15일	가. 의료용구 (1) 관장기 20개 (2) 도뇨관 30개 (단, 로빈슨 및 헤모스타틱형 도뇨관인 경우 20개) (3) 배농관 30개 (4) 수술용 고무장갑 12주 (5) 스테인레스강선호침 40개 (6) 염화비닐수지제혈액세트 65세트 (7) 의료용 견제봉합사 40올 (8) 의료용 손가락삭크 30개 (9) 수혈 및 수액세트(1회용) 50세트 (10) 자궁경부확장용 라미나리아 20개 (11) 자궁삽입용 리페스루르 200개 (12) 자궁내 삽입용 피임기구 80개 (13) 정맥 삽입용 튜브1호 30개 (14) 정맥 삽입용 튜브2호 65개 (15) 정맥 삽입용 튜브3호 70개 (16) 주사기 30개 (17) 주사침 140개 (단, 1회용이 아닌 경우 20개) (18) 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가) 1ml 400개 (나) 2ml 270개 (다) 3ml 230개 (라) 5ml 200개 (마) 10ml 160개 (바) 20ml 150개 (사) 30ml 150개 (아) 50ml 140개 (19) 콘돔 50개 (20) 팻사리 160개 나. 의약외품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0개 (2) 생리처리용 탐폰 60개 (3) 마스크 1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4) 안대 20개 (5) 치약 15개 (500g이상인 경우 5개) (6) 약용비누 15개 (500g이상인 경우 5개) (7) 에어로졸제 20캔
(1) 동물실험포합시	20일	
(2) 무균시험포합시	20일	
(3) 세포독성시험포합시	40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3) 세포독성시험포합시	40일	(8) 모기향 50매 (9) 흡연제 30매 (10) 증산제 30매 (11) 염모제 13개 (단, 150g(ml) 초과인 경우 4개) (12) 거즈 20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13) 팩거즈 30개 (14) 바셀린 가제 3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10개 추가) (15) 스폰지 가제 4package (16) 붕대 20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17) 석고붕대 15개 (18) 탄력붕대 12개 (19) 탈지면 10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0) 반창고 10개 (21) 일회용반창고 50매 (22) 삼각끈 10개 (23) 스테키넷 12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4) 복부용패드 20개 (25) 압박대 1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6) 소독포 12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7) 외과용 비닐수술포 1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 단, 세포독성시험시 5개 추가

4. 식품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과자류		
(1) 빵 및 떡류	12일	가. 400g이상
(2)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잼류	12일	가. 400g이상
나. 당류	12일	가. 600g이상
다. 아이스크림제품류	12일	가. 200g이상
라. 어육제품	12일	가. 600g이상
마. 두부류 또는 묵류	12일	가. 200g이상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바. 식용유지류	12일	가. 400g(ml)이상
사. 면류	12일	가. 600g이상
아. 다류	12일	가. 200g(ml)이상
자. 음료류	12일	가. 600g(ml)이상
차. 특수영양식품	60일	가. 1kg이상
카. 건강보조식품	20일	가. 1kg이상
타. 조미식품		
(1)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케찹	12일	가. 600g(ml)이상
(2) 소스류, 향미유,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12일	가. 400g(ml)이상
(3) 카레, 고춧가루 및 실고추, 드레싱	12일	가. 600g(ml)이상
파. 얼음	12일	가. 600g(ml)이상, 포장단위 2개이상
하. 인삼·홍삼제품류		
(1) 농축인삼·홍삼류, 인삼·홍삼분말류, 인삼·홍삼차류	12일	가. 200g(ml)이상
(2) 인삼·홍삼음료	12일	가. 600g(ml)이상
(3) 인삼과자류		
(가) 인삼캔디류	12일	가. 600g이상
(나) 인삼껌	12일	가. 400g이상
(4) 당침인삼	12일	가. 400g(ml)이상
(5) 인삼캡셀(정)류, 홍삼캡셀(정)류	12일	가. 300캡셀(정)이상 또는 600g이상
(6) 기타 인삼·홍삼식품	12일	가. 400g(ml)이상
거. 김치·절임류	12일	가. 400g(ml)이상
너. 주류	20일	가. 600g(ml)이상
더. 건포류	12일	가. 400g(ml)이상
러. 기타식품류		
(1) 전분	12일	가. 200g이상
(2) 벌꿀	12일	가. 600g이상
머. 자연산물		
(1) 잔류농약검사		가. 과일 및 채소류 : 3kg이상 나. 곡류 : 1kg이상
(가) 다성분 동시분석	3일	
(나) 단성분 분석	15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 리 기 간	시 료 소 요 량
(2) 중금속검사	12일	가. 600g이상
버. 수산물		
(1) 마비성패독검사	3일	가. 패육 : 300g이상. 단, 개각 안한 패류는 1kg이상 나. 냉동어류 기타 수산물 : 600g이상 다. 진공포장인 경우 포장단위 5개이상
(2) 일산화탄소검사	5일	
(3) 중금속검사	12일	
(4) 상기외의 검사	12일	
서. 공통기준 및 규격		
(1) 병·통조림	19일	가. 400g(ml)이상
(2) 레토르트식품	19일	가. 400g(ml)이상
(3) 냉동식품	12일	가. 400g(ml)이상
어. 상기외의 식품류	12일	가. 400g(ml)이상
<p>※ 시공품은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동일한 완제품일 것. 단, ①미생물검사항목 또는 고형량(내용량)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용량검사시 시료량이 추가될 수 있음) ②유탕처리인 경우 1kg이상</p>		
5. 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 리 기 간	시 료 소 요 량
가. 첨가물		
(1) 기준·규격 및 항목시험	20일	가. 고체 : 200g이상 나. 액체 : 500g(ml)이상 다. 기체 : 1kg이상
(2) 비소·중금속 함유량시험	20일	가. 50g(ml)이상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5일	가. 재질시험 : 50g이상 (단, PVC는 100g이상) 나. 용출시험 (1) 기구·포장 : 1m ² 이상 (2) 용기 : 100ml기준 15개이상 (단,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용기류는 5개이상, 목재는50g이상)
다. 위생용품		
(1) 기준·규격 및 항목시험	15일	가. 600g(ml)이상. 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 단위 6개이상

6. 축산물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식육·식육가공품	12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나. 유가공품	12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다. 알가공품	12일	가. 2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라. 분유류	30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마. 축산물유해잔류물질검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제)	20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이상

7. 환경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가스성분시험	14일	가. 현장채취
나. 입자상물질성분시험		
(1) 먼지, 비산먼지, 부유먼지, 중금속항목	14일	
(2) 매연	7일	
다. 악취시험		
(1) 직접관능법, 공기회석관능법	7일	
(2) 기기분석법	14일	
라. 환경소음진동측정		가. 현장측정
(1) 기록측정(소음, 진동)	2일	
(2) 대역분석(소음, 진동)	2일	
(3) 소음표시권고사항 기계소음도 측정	2일	
마. 실내공기질검사		가. 현장채취
(1)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2일	
(2) 미세먼지(PM10)	4일	
(3) 석면	5일	
(4) 포름알데히드	9일	
(5)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11일	
바. 수질검사		
(1) 폐하수, 하천수		
(가) 일반항목 및 중금속류	7일	가. PE용기 4ℓ 이상 나. n-Hexan검사시 : 유리용기 2ℓ 이상
(나) 수은 및 휘발성저급탄화수소류	10일	가. 유리용기 2ℓ 이상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대) 특정유해물질류(PCB, 유기인)	15일	가. 유리용기 2ℓ이상
(2)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개) 10항목이하	10일	가. 3ℓ이상
(내) 11 ~ 20항목	15일	가. 4ℓ이상
(대) 21 ~ 45항목	20일	가. 6ℓ이상
(태) 46항목이상	20일	가. 8ℓ이상
(3) 옥수, 옥조수 기준	12일	가. 2ℓ이상
(4) 수영장수 기준	12일	가. 1지점당 500ml이상×5개지점
(5) 오수, 분뇨, 방류수검사	7일	가. 3ℓ이상
(6) 침출수검사	20일	가. 5ℓ이상
사. 수처리제검사	17일	가. 고체 500g이상 나. 액체 500ml이상
아. 살충살서제 및 유독물시험	15일	가. 완전포장단위 액체 500g이상, 고체 100g이상
자. 폐기물 및 토양검사		
(1) 용출시험	15일	가. 500g이상
(2) 함유시험	15일	가. 500g이상
(3) 음식폐기물(합수율)	3일	가. 500g이상
(4) 폐유기용제		
(개) 5항목미만	10일	가. 1ℓ이상
(내) 5항목이상	20일	가. 1ℓ이상
(5) 전지류중 수은함유량	15일	가. 200g이상
(6) 토양오염도검사		
(개) Cd, Cu, As, Hg, Pb, Cr+6, CN	20일	가. 토양 500g이상 (시안분석시 :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내) 유기인, PCB, 페놀	30일	가.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대) 토양중 잔류농약	30일	가. 1kg이상
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1) BTEX	25일	가.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2) TPH	35일	
카. 환경시료중 다이옥신류 검사		
(1) 소각장 가스	60일	가. 현장채취

검사·시험종별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2) 토양, 폐기물, 물	50일	가. 토양 : 500g이상 나. 폐기물 : 500g이상 다. 물 : 20ℓ이상
(3) 정제시료	10일	가. 1ml이상

* 비고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검사·시험종목(품목)에 대하여는 유사 검사·시험종목(품목)에 준한다.

[별표 2]

검사·시험수수료
(제3조 제1항 관련)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미생물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1. 장내세균(살모넬라, 쉬겔라, 장염비브리오, 슈도모나스, 사이트로박터, 프로테우스, 여시니아, 병원성대장균, 장출혈성대장균)의 검사 (1항목당)	15,000
		2. 레지오넬라균검사	40,000
		3. 혐기성균군검사	20,000
		4. 일반세균검사, 유산균수검사, 진균수검사 (1항목당)	15,000
		5. 대장균군 검사, 대장균 검사 (1항목당)	20,900
		6. 식중독균검사	
		가. 살모넬라검사(Salmonella spp.), 병원성 대장균검사, 장염 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1항목당)	25,600
		나.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1항목당)	25,600
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캄필로박터 (1항목당)	31,000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1. 약전시험(공정서 및 고시 포함)	약전(공정서 및 고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 항목별로 산정함
		2. 수출인삼제제 검정	해당시험 항목에 준하여 산정
		3. 항생물질제제(생물학적)의 역가시험 (1항목당)	25,000
		4. 발열성물질시험	52,200
		5. 안전성시험	27,0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6. 무균시험 가. 직접법 나. 멤브레인필터법	20,900 35,000
		7. 생균수시험	25,000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 (1성분당)	27,000
		9. 생약제제의 확인시험 (1성분당) 가.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나. 기기분석	40,700 71,000
		10. 생약제제의 정량시험 (1성분당)	67,800
		11. 비타민제의 생물학적 정량시험 (1성분당)	73,100
		12. 봉해시험	4,500
		13. 수분 (칼피셔법)	20,000
		14. 주사제유리용기시험 가. 무색 나. 착색	3,500 9,000
		15. 수액용플라스틱용기 가. PE 또는 PP시험 나. PVC시험	82,000 120,000
		16. 효소제시험 (1항목당)	59,800
		17. 기타 의약품 및 한약재 (1성분당) 가. 기지성분 정성시험 1) 기기분석외 2)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3) 기기분석 나. 정량시험	6,800 40,700 63,800 63,800
		18. 함량 균일성시험	70,400
		19. 용출시험 (1성분당)	69,800
		20. 순도시험 (1항목당) 가.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나. 기기분석	40,700 63,800
		21. 극한점도시험, 강열잔분시험, 증발잔류물질시험, 형상시험, 효능시험, 굴절률시험, 강열감량시험 (1시험당)	5,100
		22. 불용성이물검사	1,300
		23. 비중시험, 입도시험, 실용량시험, 입자도시험 (1시험당)	2,500
		24. 용점시험, 제산도시험, 흡착력시험 (1시험당)	10,2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25. 비선광도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1시험당)	11,000
		26. 미생물한도시험	58,000
		27. 급성독성시험	71,600
		28. 증류시험, 소포력시험 (1시험당)	3,500
		29. 히스타민시험	64,700
		30. 알코올수시험	8,200
		31. 건조감량	6,900
		32. 세포독성시험	30,000
		33. 중금속 가. 비색법 나. 기기분석 (1성분당)	15,300 47,000
		34. 정유함량	17,500
		35. 표백제	33,200
		36. 검경법에 의한 정상시험	13,400
		37. 피내반응시험	108,900
		38. 이식시험	73,900
		39. 용혈성시험	36,000
		40. 회분	8,900
		41. 산불용성회분	13,500
		42. 엑스함량	7,800
		43. 보존제 (1성분당)	63,800
		44. 엔도톡신시험	89,700
		45. 잔류농약 가. 유기염소제 (5종기준) 1) 농약 1종 추가시마다 나. 단성분시험 (1종당)	330,600 10,300 81,400
		46. 수액용고무마개시험	159,500
		47. 항원성시험	178,700
		48. 엘카토닌 함량시험	214,500
		49.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 함량시험	500,000
		50. 난포자극호르몬(FGH) 함량시험	517,000
		51. 인슐린함량시험 (생물학적 방법)	850,0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52. 그 밖의 시험 (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화장품	1. 화장품시험 가. 정성시험 (1성분당) 나. 정량시험 (1성분당) 다. 납 라. 수은 마. 메탄올 바. 비소	5,000 26,500 21,500 21,500 8,200 15,300
		2. 그 밖의 시험 (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공통	1. 중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 시험, 안정성시험 (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	8,800
	미생물학적 검사	1. 디스크성능시험	14,800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의 시험	의료용구	1. 세포독성시험
2. 무균시험 가. 직접법 나. 멤브레인필터법			20,900 35,000
3. 급성독성시험			71,600
4. 이식시험			73,900
5. 용혈성시험			36,000
6. 발열성시험			52,000
7. 피내반응시험			108,900
8. 인장강도시험, 신장도시험, 영구신장시험, 인열강도시험 (1시험당)			14,500
9. 자극성시험 (안자극성시험)			49,000
의약외품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1,000
		2. 마스크 가. 수술용 나. 보건용	35,000 35,000
		3. 월경처리용탐폰	50,000
		4. 안대	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 (1시험당)	5,2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의 시험	의약외품	6. 가아제 -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45,000		
		7. 붕대 -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40,000		
		8. 탈지면 -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50,000		
		9. 반창고 -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43,200		
		10. 삼각끈	15,000		
		11. 스테키넷	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 (1용품당)	35,000		
		13. 탄력붕대	31,400		
		14. 복부용 패드	135,000		
		15. 팩거즈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45,000		
		16. 소독포, 수술포 (1용품당)	7,800		
		17. 형상시험	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률시험 (1시험당)	16,400		
		공통	1. 기타시험 (1항목당)	4,000	
			2.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이 표의 의약품· 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유사시험항목 수수료에 준함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1. 피.에이치 (pH)	9,000
				2. 비중	2,800
				3. 굴절률	5,900
	4. 색도			4,700	
	5. 진공도			3,600	
6. 가스압	3,800				
7. 형광증백제	8,600				
8. 미량영양성분 가. 비타민 A 나. 비타민 B1	91,600 71,4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다. 비타민 B2	93,900
		라. 나이아신	66,400
		마. 칼슘, 인, 철, 나트륨, 아연 (1항목당)	53,900
		바.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검사 (1항목당)	73,100
		9. 이플라톡신(정성, 정량) (1항목당)	100,000
		10. 항생물질	
		가. 정성시험 (1항목당)	20,000
		나. 정량시험 (1성분당)	40,000
		다. 미생물학적 검사 (1항목당)	73,100
		11. 합성항균제	
		가. 정성시험 (설패게)	20,000
		나. 정량시험 (1성분당)	40,000
		12. 성장촉진제 (1성분당)	180,300
		13. 산화방지제	56,000
		14. 보존료	46,000
		15. 착색료 (타르색소)	36,000
		16. 인공감미료 (정성시험)	29,200
		17. 발색제 (아질산염)	26,500
		18. 식이섬유	79,000
		19. 이물, 산불용성회분, 총산, 염소이온, 사분, 총염소, 황산이온, 고형량, 입도, 염화나트륨, 당도, 포도당량, 텍스트린분, 고형분, 휘발성 염기질소, 가용성고형분, 비누화가, 비비누화물, 요오드 가, 전고형분, 산가, 과산화물가, 무염가용성고형분 (1항목당)	10,200
		20. 위화물	26,000
		21.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이온 (1항목당)	15,800
		22. 용액의 착색도, 용액의 탁도 (1항목당)	15,000
		23. 인삼성분, 홍삼성분, 홍삼성분확인시험 (1성분당)	39,700
		24. 히드록시메틸푸트푸랄	21,000
		25. 이성화당	20,700
		26. 전화당, 환원당, 총당, 올리고당 (1항목당)	39,000
		27. 과당	32,400
		28. 순추출물	25,500
		29. 차성분	15,000
30. 조지방, 에탄올, 조섬유, 총질소, 아미노산성 질소 (1항목당)	31,6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31. 냉각시험, 상승응점	43,900
		32. 주석, 납, 카드뮴, 비소 (1항목당)	86,900
		33. 알데히드	22,800
		34. 수은	96,100
		35. 인지질, 알록시글리세롤, 헥사코사놀, 시안화합물 (1항목당)	36,000
		36. 열량	92,000
		37. 알파화도, 산도, 유기산도, 단백질응고시험 (1항목당)	13,500
		38. β -토코페롤, 10-히드록시-2-데센산, γ 오리자놀, 단백질, 자실체, 균사체, 히드록시프롤린 (1항목당)	89,000
		39. 비타민C, 총토코페롤, γ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엽록소, 엽록소b, 총페오포르바이드, 엽록소a, 총엽록소, 페오포르바이드, 포스파티딜콜린조성비, 카테킨, 콘드로이친황산, SOD, 안트라퀴논계물질, 키토올리고당함량, 총플라보노이드 (1항목당)	48,400
		40. 콘드로이친황산 : 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 (1항목당)	79,900
		41. 에이코사펜타엔산, 도코사헥사엔산, 리놀렌산, γ -리놀렌산, 팔필올레산, 스쿠알렌, 콜레스테롤, 옥타코사놀, 메탄올 (1항목당)	58,900
		42.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69,100
		43. 기타 미량금속검사, 기타 영양성분 (1항목당)	68,800
		44. 패류의 마비성패독 검사	36,000
		45. 냉동참치,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시험	59,000
		46. 잔류농약 가. 동시 다성분시험 나. 단성분시험 (1종당)	577,800 81,400
		47. 기타시험 (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식품첨가물	1. 확인시험 (1항목당) 가. 정성반응 나. 기기분석	6,000 33,000
		2. 순도시험 (1항목당) 가. 정성반응 나. 기기분석	6,000 33,000
		3. 건조감량	5,000
		4. 강열잔류물	7,8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첨가물	5. 수분 (칼피셔법)	12,000
		6. 정량시험 가. 색소(색가) 나. 효소(역가)	6,000 32,000
		7. 기타시험 (1항목당) 가. 적정법 나. 기기분석	7,700 40,600
		8. 그 밖의 시험 (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페놀	27,000
		2. 중금속	36,000
		3. 형광증백제	8,600
		4. 색소	9,200
		5. 염화비닐단량체	38,300
		6. 납, 카드뮴 (1항목당)	40,000
		7. 디부틸주석화합물	33,9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41,300
		9. 휘발성물질	30,800
		10. 염화비닐리덴	23,900
		11. 바륨	39,300
		12. 비스페놀 A	43,8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	34,700
		14. 아민류	21,000
		15. 증발잔류물	10,100
		1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8,700
		17. 안티몬	17,300
		18. 게르마늄	34,000
		19. 포름알데히드	24,000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및 카프로락탐	24,300
21. 멜라민	29,200		
22. 이소시아네이트	28,700		
23. 불소이온	20,900		
24. 아크릴로니트릴	24,3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기구 또는 용기·포장	25. 2-머캅토이미다졸	32,100
		26. PCBs	69,100
		27. 비소, 아연 (1항목당)	36,000
		28. 기타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위생용품	1. 중금속류	36,000
		2. 색소	9,200
		3. 형광증백제, 피·에이치(pH), 증발잔류물 (1항목당)	8,600
		4. 메틸알콜	43,000
		5. 비소, 아연 (1항목당)	36,000
		6. 계면활성제상당분 가. 에탄올가용분 나. 석유에테르가용분 다. 요소	49,000 53,000 70,600
		7. 휘발성물질	30,800
		8.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분 (1항목당)	9,800
		9. 납, 카드뮴 (1항목당)	40,000
		10. 페놀	27,000
		11. 포름알데히드	24,000
		12. 기타 시험 (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가스성분시험	1. 암모니아	17,400
		2. 일산화탄소	6,000
		3. 염화수소	17,400
		4. 염소	17,200
5. 황산화물		18,300	
6. 질소산화물		18,400	
7. 이황화탄소		17,700	
8. 포름알데히드		23,100	
9. 황화수소		16,7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가스성분시험		10. 불소	17,100
		11. 시안	30,000
		12. 브롬	22,300
		13. 벤젠	47,300
		14. 페놀	19,100
		15. 비소	25,500
		16. 수은	29,700
입자상 물질 성분시험		1. 먼지	12,000
		2. 비산먼지	22,000
		3. 중금속	20,700
		4. 매연	5,500
악취시험		1. 직접관능법	36,700
		2. 공기회석관능법	36,500
		3. 기기분석법 가. 암모니아	34,400
		나.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또는 이황화메틸 (1성분당)	83,000
		다. 트리메틸아민	53,900
		라. 아세트알데히드	50,100
		마. 스티렌	48,000
환경소음진동 측정		1. 기록측정(소음진동)	3,400
		2. 기록측정(진동측정)	3,400
		3. 대역분석 가. 소음	6,900
		나. 진동	6,500
		4.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 소음도 측정	7,300
대기오염도 검사	도장시설검사	1. THC(Total Hydrocarbon)농도검사	78,500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실내 공기질 검사	1. 미세먼지(PM10)	22,000
		2. 석면	45,000
		3. 이산화탄소(CO2)	6,000
		4. 일산화탄소(CO)	6,000
		5. 포름알데히드(HCHO)	23,100
		6. 이산화질소(NO2)	18,4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실내 공기질 검사	7. 오존(O3)	51,000
		8.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5,000
		9. 라돈	58,100
		10. 총부유세균	39,400
수질검사	폐하수·오수 ·하천수·호소수	1. 수소이온농도	800
		2. 전기전도도	3,000
		3. 온도	300
		4. 색도 (투과율법)	2,900
		5. 부유물질	2,800
		6. 총노말 - 핵산추출물질	6,000
		7. 노말 - 핵산추출물질(광유류)	15,400
		8. 인산염인	5,600
		9. 염소이온	2,900
		10. 화학적 산소요구량	7,300
		1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800
		12. 용존산소	2,800
		13. 총인, 용존총인 (1항목당)	3,400
		14. 총질소, 용존총질소 (1항목당)	3,700
		15. 암모니아성 질소	10,800
		16. 아질산성 질소	2,800
		17. 질산성 질소	5,400
		18. 시안	13,100
		19. 페놀류	7,800
		20. 음이온 계면활성제	13,200
		21. 불소	7,400
		22. 유기인	20,300
		23. 크롬, 구리, 카드뮴, 납, 아연, 망간, 니켈, 철 (1항목당)	6,900
		24. 세레늄(AAS법)	6,000
		25. 비소	13,900
		26. 수은	10,6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수질검사	폐하수·오수 ·하천수·호소수	27. 6가크롬	6,900
		28. 알킬수은	17,400
		29. PCB	125,200
		30. 휘발성 저급탄화수소류	13,900
		31. 대장균	9,400
		32. 총대장균군(하천수, 호소수)	14,800
		33. 총대장균군(폐하수)	6,200
		34. 분원성대장균군(하천수, 호소수)	11,400
		35. 여시니아	28,100
		36. 클로로필a	1,300
	37. 정화조 기능시험(제거율시험 : 유입수 및 처리수)	12,800	
	먹는물, 먹는샘물	1. 수소이온농도지수(pH)	300
		2. 맛	300
		3. 냄새	600
		4. 색도	2,600
		5. 탁도	400
		6. 총경도	2,400
		7. 유리탄산	2,500
		8. 증발잔류물	2,900
		9.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800
		10. 잔류염소	3,700
		11. 염소이온	3,900
		12. 황산이온	11,800
		13. 암모니아성 질소	2,300
		14. 질산성 질소	7,200
		15. 시안	11,300
		16. 페놀류	9,300
		17. 세제	9,200
		18. 불소	9,300
		19. 유기인계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15,6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수질검사	먹는물, 먹는샘물	20. 구리	6,100
		21. 카드뮴	6,100
		22. 납	6,100
		23. 세레늄	6,600
		24. 이연	6,100
		25. 망간	6,100
		26. 철	6,100
		27. 알루미늄	6,100
		28. 보론(B)	3,100
		29. 비소	7,700
		30. 수은	6,600
		31. 6가크롬	3,900
		32. 휘발성 유기물질류	
		-총트리할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19,600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3,600
		33. 대장균	6,200
		34. 총대장균군	8,800
		35. 일반세균	5,300
		36. 저온 일반세균	6,100
		37. 분원성 대장균군	8,400
		38. 분원성 연쇄상구균	9,200
		39. 녹농균	13,100
		40. 이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	5,300
		41. 쉬겔라	14,600
		42. 살모넬라	15,900
43. 카바릴	15,700		
44.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트니트릴, 디클로로아세트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트니트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21,400		
45.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29,2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수처리제		1. 수소이온농도	1,900
		2. 비중	1,100
		3. 염화물	2,900
		4. 염기도	4,700
		5. 건조감량	2,100
		6. 체잔류물	4,300
		7. 암모니아성 질소	7,000
		8. 황산이온	9,600
		9. 불용성물	2,600
		10. 염기치환용량	9,600
		11. 경도	3,300
		12. 철	9,300
		13. 3가철	8,200
		14. 2가철	8,000
		15. 납	9,700
		16. 카드뮴	9,700
		17. 크롬	10,300
		18. 망간	9,600
		19. 세레늄	8,100
		20. 아연	9,500
		21. 비소	9,600
		22. 수은	9,100
		23. 정인산염	5,100
		24. 산불용성 회분	9,100
		25. 유리알카리	2,800
		26. 유리산	2,900
		27. 페놀가	9,000
		28. ABS가	7,200
		29. 메틸렌블루탈색력	5,600
		30. 요오드흡착력	3,0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수처리제		31. 염화나트륨	4,900
		32. 황산	1,700
		33. 강열잔류물	6,000
		34. 유효염소	3,600
		35. 산화알루미늄	4,000
		36. 알긴산나트륨	4,100
		37. 인산염	6,400
		38. 규산염	9,400
		39. 산화칼슘	4,100
		40. 황산동	2,600
		41. 수산화나트륨	3,000
		42. 이산화규소	7,200
		43. 이산화염소	3,000
		44. 폴리아민 합량	3,400
		45. 에피클로로히드린 및 총클로로프로판올	14,800
유독물시험		1. 확인시험 (1성분당)	23,300
		2. 함량시험 (1성분당)	23,300
		3. 순도시험 (1성분당)	9,500
		4. 내용량 (중량편차시험)	6,400
		5. 유화성 및 유화안정성 시험	6,400
폐기물 및 토양검사	폐기물시험검사	1. 수소이온농도	4,000
		2. 수분 또는 고형물 (1항목당)	2,200
		3. 강열감량	4,000
		4. 유기물 함량	4,000
		5. 기름성분	10,800
		6. 시안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8,200 22,200
		7. 유기인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25,100 29,0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 액(원)
폐기물 및 토양검사	폐기물시험검사	8. PCB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88,000 123,000
		9. 휘발성 저급 염소화탄화수소류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27,400 28,200
		10. 크롬·구리·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가. 함유시험 (1성분당) 나. 용출시험 (1성분당)	39,100 15,100
		11. 비소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3,700 16,900
		12. 수은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8,800 11,800
		13. 6가크롬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3,300 17,700
		14. 할로젠화유기물질(1성분당) 가. 함유시험 (휘발성) 나. 함유시험 (반휘발성) 다. 용출시험 (휘발성) 라. 용출시험 (반휘발성)	12,800 20,200 43,800 23,100
	토양오염검사	1. 수소이온 농도	2,800
		2. 카드뮴, 구리, 납 (1항목당)	10,600
		3. 비소	8,700
		4. 수은	18,300
		5. 6가크롬	18,300
		6. 아연, 니켈 (1항목당)	25,700
		7. 불소	49,100
		8. 유기인	27,900
		9. PCB	49,600
		10. 시안	11,100
		11. 페놀류	41,200
		12. 유류(BTEX)	28,500

분 야	세부분야	검사 시험항목	금 액(원)
폐기물 및 토양검사	토양오염검사	13. 유류(TPH)	36,400
		14. TCE, PCE	19,400
		15. 시료채취비 (1공당)	43,200
		16. 토양중 잔류농약 (1항목당)	20,700
		17. 정밀조사 평가비 (시료채취비, 분석비 제외)	868,800
	소각시설검사	1.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 (시료채취)	2,166,000
		2.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	2,568,500
		3. 다이옥신 시료채취 출장비	266,000
	폐기물, 토양 및 수질 등	1.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 가. 폐기물, 토양, 수질 나. 정제시료	2,568,500 850,000
	(주) 정제시료란 추출액에 EPA1613 방법에 따라 정제용내부표준물질을 넣어 실리카, 알루미늄 및 활성탄칼럼으로 정제한 시료를 의미한다. 이때 고분해능질량분석기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된 시료의 GC크로마토그램을 함께 제출하거나 혹은 분리칼럼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고: 1. 정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별표 3] <u>재교부 수수료</u> (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원)	
1. 검사·시험성적서 (1건)		1,000	
2. 외국어번역문 (1건)		2,000	
3. 교육수료증 (1건)		1,000	
[별표 4] <u>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비</u> (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원)	
1. 기본교육과정		250,000	
2. 전문교육과정		350,000	
3. 보수교육과정		80,000	

[별지 제1호 서식]

검사·시험의뢰서

(제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처리기한	200 . . 일까지		
					이행기한	200 . . 일까지		
시 료 명 (품 목)	검사·시험 항 목	검사·시험 목 적	제 조 자	제 조 법 또는 성분표	수 수 료	성적서수령방법		비고
						우편	직접교부	

상기 시료를 검사·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의뢰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주 소 :

○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업체소재지(시료채취장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210mm × 297mm
 (인쇄용지 54g/m²)

[별지 제2호 서식]

검사·시험의뢰 접수증

(제2조 제3항 관련)

주소

귀하

접수번호	검사·시험 의뢰사항	수수료	처리기한	비 고

상기와 같이 검사·시험의뢰를 접수하였습니다.

검사·시험성적서는 민원인이 요구한 수령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직접교부하여 드립니다.

본원의 사정에 따라 검사·시험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별도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접수자)

※ 문의전화 : 570-3330~3

148mm × 210mm
(인쇄용지 54g/m²)

[별지 제3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3조 제2항 관련)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장)		(관)	(장)		(관)
(항)		(목)	(항)		(목)	(항)		(목)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_____ 단 _____			₩ _____ 단 _____			₩ _____ 단 _____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_____			인			인		
년 월 일			징수관 귀하					
징수관 _____			납부자 _____					
성 명 인			징수관 인 취급자 인					
(납부자) 귀하			수입금 인 기 장 인 출납원			(납부자) 귀하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210mm × 297mm

[별지 제4호 서식]

검사·시험성적서

(제4조 제1항 관련)

접수번호 :

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1. 의뢰인	
2. 업체명 및 소재지 (시료채취장소)	
3. 시료명	
4. 시험항목	
5. 시험목적	
6. 접수년월일	
7. 시험완료일	
성적(검사·시험결과)	
※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에 한하며 검사·시험의뢰 목적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의뢰하신 시료의 검사·시험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210mm × 297mm
(인쇄용지 54g/m²)

[별지 제6호 서식]

교육훈련신청서

(제2조 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육과정		교육일시	
	주 소	(전화)		
사업장	법인 또는 상호명		대 표 자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전화)		

1.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의 이해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고용보험 사업장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교육수료 후 노동부의 환급기준에 의거 교육비의 일부가 사업주에게 환급 됩니다.
3. 교육기간 중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수료증이 발부되지 않으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훈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신청인 성 명 :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귀하

148mm × 210mm
(인쇄용지 54g/m²)

[별지 제7호 서식]

교육신청서 접수 및 수료증 수여대장

(제4조 제2항 관련)

연번	접 수		소속 사업장			교육대상자			교육비 입금일	교육 일시	수료증 번호	기타	결 제		
	월일	접수 번호	사업장명	영업장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교육 과정					담당	팀장	부장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 또는 상호 :

교육 과정 :

교육 기간 :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상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서울특별시규칙 제3490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재정분석담당관
3. 도로관리과장
4.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장
5. 자치구의 도로굴착업무 관련 담당국장 중 1인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게 됨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공무원신분의 위원수를 정비(8인 → 6인)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3491호

서울특별시119구급대및구조대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119구급대및구조대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119구급대및구조대운영규칙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급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종합병원의 응급실장 또는 응급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
2. 응급의학 또는 응급구조학 관련 교수
3.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사회 회장
4.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병원협회 회장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응급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7.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보건소장 및 시 보건정책과장·구조구급과장

③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 소방방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구급관리담당 지방소방령으로 한다.

③간사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에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우리시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이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 사항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 중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 부령에 의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구급대책협의회'가 설치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제2조)
- 나. 동 협의회의 위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및 시·자치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3조)
- 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 2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도록 함(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492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중 “ $Q2 = 0.64 \times 10,000 a\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를 “ $Q2 = 0.64 \times a \div 10,000\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sqrt{P}$ ”로 하고,
 “ $A = \text{면적}(m^2) = 10,000a(\text{cm}^2)$ ”를 “ $A = \text{면적}(m^2)$, $a = \text{면적}(cm^2)$ ”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한다.

제14조중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수도조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산정 공식중 시간당 손실수량의 일부 문구 오류 항목을 수정하여 그 유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려는 것임.
 - “공식(Q2)” 및 “면적단위(A)” 수정

현 행	수 정 안
$Q2 = 0.64 \times 10,000 a\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2 = 0.64 \times a \div 10,000\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sqrt{P}$
$A = \text{면적}(m^2) = 10,000a(\text{cm}^2)$	$A = \text{면적}(m^2)$, $a = \text{면적}(cm^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1호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에게 수학기간 중에 숙식편의를 제공하고, 자율과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며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시립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생활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시설 개요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내
 -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256㎡(수용가능인원:309실 612명)
- 2.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731-6152, FAX: 731-6309, E-mail: seoul5@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2호
 서울특별시세무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법」과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배당금 수령 후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배분착오 등을 사유로 배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만 반환하도록 하던 것을, 배분착오 등이 명확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의 예에 의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압류자동차 공매가 「공매자동차 정보제공에 의한 협약」에 의해 인터넷 공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매자동차에 대한 공매공고문 게재 및 견적가격조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다.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이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공매대행의 중지사유 및 회사정리절차 중의 채납정리 등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 라.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공개대상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규정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하도록 함.
 - 마.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및 무허가건축물 축조 관련 과세자료 통보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미흡에 따른 과세누락을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함.
-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세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3707-8620, FAX: 731-6956, E-mail: mooha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시립대학교 과장(3명)의 직급과 장기근속 별정직(6명), 기능직(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방재본부, 역사박물관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증원 없이 현재대로 16,331명을 유지하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731-6151, FAX: 731-6309, E-mail: seoul6@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제정(2006.5.4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주무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나, 총괄관을 재무국장으로 일원화하여 시 전체재산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현황유지 및 공급체계 확보
 나.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등 물품관리 책임자를 기관(부서)별 실정에 맞게 지정
 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며, 심의대상에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산가격의 사정을 추가
 라. 시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마.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가산금납부고지서 등 불필요한 서식을 폐지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현실에 맞게 서식내용 일부를 개선
 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각각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 02) 3707-9031-2, FAX: 02)3707-9049, E-mail: myong124@paran.com)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 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함
 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사업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분할매각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 02) 3707-9031-2, FAX: 02)3707-9049, E-mail: myong124@paran.com)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4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48호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설립·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산학협력연구 집적시설인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설립에 따라 동 시설에 입주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맞춰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동 재단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산업지원과, 전화: 6321-4002, FAX: 3707-9369, E-mail: lhsd@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66호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지정

만리동 정영국가를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같은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개요

○ 문화재 지정개요

지정종별	지정명칭	지정대상	소재지번	수량 및 면적	소유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 32호	만리동 정영국가 (萬里洞 鄭榮國家)	총 계	총 4동(안채·사랑채·행랑채·결채)		정희숙 정남준 정남정 정남인 정길자 정남철 정명균
		안 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07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0-1	1동 (140.2㎡)	
		사랑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07	1동 (39.6㎡)	
		행랑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07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0-1	1동 (30.5㎡)	
		결 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07	1동 (바닥면적 22.3㎡)	

○ 보호구역 지정 개요 - 총 4필지, 총 381.7㎡

연 번	지 정 지 번	지 적	지 목	지정면적	소유자
	총 계	1,265.7㎡		381.7㎡	
1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07	299㎡	대지	292.7㎡	정남준 정남정 정남인 정길자 정남철 정희숙 정명균

연 번	지 정 지 번	지 적	지 목	지정면적	소 유 자
2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0-1	220.9㎡	도로	13.2㎡	중구
3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76-45	364.6㎡	대지	73.2㎡	정남준 정남인 정남철 정길자 정남정 정희숙 정명균 정복균 정천균
4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0-3	381.2㎡	도로	2.6㎡	중구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 -
 <별첨 1> 도면 참조

2. 지정사유

<만리동 정영국가>는 1930년대 후반 경성부(京城府)의 인구 급증에 따라 새로이 개발된 주거단지 중 하나인 만리동 [일제시대 때는 봉래정 4정목(蓬萊町 4丁目)]지역에 1936년 신축된 상류층 도시형 한옥이다. 이 한옥을 최초로 건립한 정영국(鄭榮國)씨는 흥국생명을 창립하고 동명고무(활표 고무신)와 삼정광업을 운영한 신흥자본가이다.

구(舊) 가옥대장에 의하면 건립 당시의 규모는 지하 1층(4평)·지상 1층(38평)이었고, 구조는 목조와즙(木造瓦葺)이었다. 이후 1949년에 지상 2층 총 19평 규모(1층은 11평, 2층은 8평)의 목조도단즙(木造鈿丹葺) 건물을 서쪽에 증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등을 탄 비탈진 부지에 약 2m 이상 높이의 단을 조성하여 남향으로 건립된 이 한옥은 그리 넓지 않은 부지이기 는 하지만 땅을 잘 활용하여 안채·사랑채·행랑채·결채 등 4동이나 되는 건물을 배치하였다. 한옥 정면에 3간의 ‘—’자형 행랑채를 놓고 그 앞에 옆으로 돌계단을 시설했다. 대문을 지나면 중문간인데 동쪽으로 반 칸이 큰 사랑채가 있어서 담장을 막아 공간을 구분한다. 말하자

면 중문간채가 사랑채에 덧붙여져 있는 형상이다. 중문간 안으로 안마당이 있고 뒤쪽에 ‘—’자 형태의 안채를 배치했다. 서쪽 담장 밖은 다시 뒷길이어서 뒷문이 시설되고 한국전쟁 직전에 증축된 2층의 결채가 그 사이에 놓여졌다. 그러나 이 2층 건물은 뒷길 확장공사 때 1/3 규모로 축소되면서 건물의 외관은 완전히 변형되었다. 중문간채와 행랑채 서쪽은 안마당 한 단 아래에 정원 공간 혹은 텃밭이 조성되었고 담장으로 막아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대문으로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눈다든가 대문 앞 계단과 대문간, 중문간의 축을 일치시키지 않아서 동선이 전곡(轉曲)되면서 감지되는 공간의 변화는 온전한 전통한옥의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건물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채는 전형적인 5칸 전후퇴집이다. 동쪽으로 건넌방, 북판에 2칸 대청, 동쪽으로 꺾어지면서 안방, 앞쪽으로 부엌이 배열되는 순서이다. 건넌방 앞에는 툇마루가 놓이고 건넌방 서쪽에도 머리퇴가 배치되었는데 상부는 개조되고 아래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머릿방임을 알 수 있다. 부엌은 건립 당시에는 재래식 부엌이었으나 1990년대에 입식으로 개조되었는데 지하실로 들

어갈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하부는 전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2칸 전후퇴집으로 작은 규모인데 그 옆으로 맞배지붕의 2칸 중문간채가 덧붙여진다. 서쪽에는 중문간방이 시설되었고 안마당에서 출입토록 설계되었다.

문간채는 맞걸이 3량의 3칸집인데 중앙에 문간이 놓이고 동쪽에는 문간방이 시설되는데 문간으로 출입하기 위한 쪽마루 시설이 예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밖에 49년에 증축된 안채 서쪽 2층 겹채도 당시의 구조법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각 건물 모두 일반적으로 잘 짓는 집의 전형을 보여주는 구조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큰 구조적 변형 없이 오늘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배치와 구조상의 특징 외에 이 한옥은 의장과 조경 면에서도 당시의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우선 문밖의 장식이 당시의 조형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대청 앞의 아자무늬 미서기문, 부엌의 완자무늬문, 안방 셋문, 대문 상부 등 각종 고창에 시설된 마름모꼴 문양은 당시의 조형언어를 잘 시사하고 있다. 문간방 앞의 쪽마루나 부엌 앞, 건너방 머리퇴 등의 쪽마루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특히 안채의 경우는 고창의 마름모 문양, 긴보 5량의 구조미, 뒤퇴의 판문, 안방 장지문의 그림, 대청 상부의 시렁, 건너방 미단이창의 아자 문양, 안채 부엌과 사랑채 사이에 끼워 시설한 불박이 찬장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이면서도 20세기적인 조형미를 함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대문간의 경우 2칸으로 구부리지 않고 단칸으로 처리하되 유리창이 달린 아자 중문을 시설하여 시선을 차단하는 방식은 20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방식인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문간이나 중문간채에 딱지소로를 붙인다든가 맞걸이3량으로 가공한 모습은 전통미를

살리려고 했던 당시 장인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기둥 분수 등이 가늘게 처리된 것도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랑채와의 쪽문 시설도 의장적으로 간이하면서 아름답다.

한편 조경적 측면에서 볼 때 집 앞 계단위를 등나무는 기어오르도록 배치한 것은 20세기 정원사에 기록해 둘 방식이다. 문간채 앞에 조그만 바깥마당을 설정하고 있는 점은 전통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안마당에는 서쪽으로 몇몇의 관목을 심어 두었는데 완벽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원사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문간채 서쪽으로 한단 아래 머리정원을 별도 배치한 것도 특이한데 상당 부분 원형을 상실했다. 안채 뒤쪽에 조성된 화계(花階)도 분위기가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옛 서민들의 조경 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집은 일제시대 신흥 자본가의 주생활 의식과 미의식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대가 계속적으로 한 집에서 대를 이어 산 집으로서 민속 생활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창건 당시의 모습을 별로 개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20세기 전반의 전통건축미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전통적 생활사까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옥이다. 당시 일반적 도시형 한옥들이 전통적인 한옥 배치평면을 벗어나 'ㄷ'자형 또는 'ㄱ'자로 변화하는 데 반해 이 한옥은 공간배치와 건축구조 면에서 전통적 한옥의 조형미를 계승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건축 의장과 조경 면에서도 전통한옥의 발전과 외래요소의 도입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양상을 보여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와 같이 민속생활사적, 건축사적, 조경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큰 이 한옥은 만리동 지역 뿐 아니라 서울의 20세기 전반기 주생활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한다.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규정상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자연적 지형, 주변주택재개발 계획 등의 인위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인 현 담장 안 지역(만리동2가 207번지 등 총 4필지, 총 381.7㎡)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동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

3.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필지 등에 미치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보호구역 지정 대상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58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허가사항)·같은 조례 제17조(행정명령) 및 제18조(신고사항) 규정의 적용 대상임

-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대상임
-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를 초과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임

4. 지정일자 : 2006. 5. 1(월)

【별첨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67호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
역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의 1필
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나. 사업구역 및 그 면적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명칭 :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주
택재건축정비사업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고
신 규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의 1필지	65,238.4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65,238.40	100.0	층수완화(12층→평균15층)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	65,238.4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873.22	5.94	
	도 로	2,653.02	4.07	
	공공공지	1,220.20	1.87	
획 지	소 계	61,365.18	94.06	
	획 지 1	61,365.18	94.06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 점	
기정	중로	2	258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981 (325)	대로 3-63	대로 3-196	
변경	대로	3	1	2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76 (325)	대로 2-3	대로 2-2	고덕1단지측으로 5m 도로확폭
기정	중로	3	181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72 (208)	광로 2-80	중로 3-180	
변경	중로	1	4	20~21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68 (208)	광로 2-80	대로 2-2	고덕1단지측으로 5m 도로확폭

주) ()안의 연장은 정비구역내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공공공지	고덕동 499번지	-	증 1,220.20	1,220.20		

바.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자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m ²)	명칭	면 적 (m ²)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고덕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5,238.40	획지1	61,365.18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 외1필지	16	-	-	16	-	주거동 : 14동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역 구 분	획지구분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m ²)	층 수 (높 이)	
	명 칭	면적(m ²)						
고덕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5,238.40	획지1	61,365.18	공동 주택	30% 이하	205.59% 이하	230,417.96	평균 17.5층 이하 최고 20층 이하 (6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74.95m ² (법정 : 297m ²)		총세대수 1,138세대					
	전용면적 60m ²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3.20%(법정 : 20%)		264세대					
	전용면적 60m ² ~85m ²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1.48%(법정 : 40%)		472세대					
	전용면적 85m ²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35.32%(법정 : 40%)		402세대					
	전용면적 85m ² 이하 연면적 비율		50.84%					

- ※ 주1) 건축시설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당시의 서울시 건축조례상 탐상형 인동거리 0.8배를 적용한 계획임.
- ※ 주2) 평균 17.5층에는 임대주택부분도 포함됨.
- ※ 주3) 계획용적률·세대수에 임대주택도 포함.

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남, 북측 도로면 건축한계선 5m설정	-쾌적한 보행환경 제고
	서측 공공공지면 건축한계선 3m설정	-공공공지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자.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주변 다수의 공원들로의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다양한 층수계획으로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유도 ○단지내부에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 ○단지경계 및 보행도로변으로 담장설치를 지양하여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 		
환경보전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녹지공간 최대 확보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수질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지구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지내에 녹지 최대확보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지하굴착을 한강의 해발고도인 6.8m보다 높게 하고 빗물저수조, 자연지반의 최대화 등을 통한 침수에 대비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차.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용적률 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용적률(A) : 63.93%(감소된 대지면적 기준) ▪ 계획용적률(B) : 205.58% ▪ 용적률 증가 : B - A = 141.65%
증가용적률 25%	▪ 141.65% × 25% = 35.4125%
연면적 환산	▪ 61,365.18㎡ × 35.4125% = 21,730.94㎡
임대주택 확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31.34㎡ ▪ 25평형 258세대

※ A = 39,233.40㎡ / 61,365.18㎡

※ B = 126,154.54㎡ / 61,365.18㎡

- 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 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358세대
- 하. 기타 : 평균층수 관련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한 내용은 개정안에 따름.
- 거.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3707-8215 ~6) 및 강동구청 주택과(☎ 480-1380 ~3)에 관계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68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구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구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을 「화물자동차정류장」에서 「화물터미널·대규모점포·창고」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의 기능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구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총괄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세부시설명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통업무 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일대	계	342,706.9	-	342,706.9	전체면적 변경없음
		양재동 214	사무소	15,355.2	-	15,355.2	
		양재동 215	대규모점포(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28,972.3	-	28,972.3	
		양재동 216외1	간이주유소	8,151.9	-	8,151.9	
		양재동 217-7외2	화물터미널	3,768.5	-	3,768.5	
		양재동 217외3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경매장	12,858.9	-	12,858.9	
		양재동 217-6	대규모점포	9,598.5	-	9,598.5	
		양재동 222외1	집배송시설	17,477.2	-	17,477.2	
		양재동 223외1	도매시장	32,803.0	-	32,803.0	
		양재동 224	화물자동차정류장	10,342.7	-	10,342.7	
		양재동 225외6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96,017.4	-	96,017.4	세부시설명 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세부시설명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통업무 설비	양재동 229외2	생활물자저장소	17,539.3	-	17,539.3	
		양재동 230외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65,641.6	-	65,641.6	도로 337.2m ² 포함
		양재동 231외3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창고, 유통 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24,180.4	-	24,180.4	도로 및 녹지 2,222.42m ² 포함

2) 금회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세 부 시설명	진 축 규 모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기정	유통업무 설비	서초구 양재동 225외6	96,017.40	화물자동차 정류장	-	-	-	
변경	유통업무 설비	서초구 양재동 225외6	96,017.40 대지 : 89,834.4m ² 도로 : 6,183.0m ²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이하	400%이하	해발190m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적용)	서울시고시 2001-312호 (2001.9.25) 도로 편입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73) 및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전화 570-638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69호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3호(2006.3.16)

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작동 5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정 내용

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층)
	명 칭	면적(m ²)	명 칭	면적(m ²)					
정정전	동작동 58-1일대 (정금마을)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8,251	획지1 (공동주택공지)	37,827	동작동 58-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 이하	213.1 이하	10층 이하 15층 이하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 칭	면적(m ²)	명 칭	면적(m ²)					
정정후	동작동 58-1일대 (정금마을)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8,251	획지1 (공동주택공지)	37,827	동작동 58-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7% 이하	10층 이하 15층 이하

- 3. 정정 사유 :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정정
-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3707-8247)와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0호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건설부고시 제123호(1989.3.21)로 택지개

발 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81호 (1996.6.27)로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대치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1.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공용의 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용의 청사	개포동 14	9,917.4	-	9,917.4	경찰서
공용의 청사	개포동 12-6	999.9	-	999.9	동사무소
	개포동 12-9	165.0	-	165.0	파출소
	개포동12-10	686.0	감)686.0	-	소방파출소
공용의 청사	개포동 14-4	4,958.7	-	4,958.7	우체국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사회복지시설	개포동 12-5	13,000.5	-	13,000.5	
사회복지시설	개포동12-10	-	증)686.0	686.0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3707-8287) 및 강

남구 도시계획과(☎ 2104-183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1동 236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을 다음과 같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에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위 치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중구 신당1동 236번지 일대	계	42,767	-	42,767		
	주거지역	소 계	37,207	증) 5,56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913	감) 3,913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515	감) 20,515	-	
	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79	증) 29,988	42,767	
		소 계	5,560	감) 5,560	-	
	일반상업지역	5,560	감) 5,560	-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내 용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방화지구	광희동~행당동로타리	-	71,280 (4,766)	건고 727 ('63.12.13)	()는 대상지구간
변 경	방화지구	광희동~행당동로타리	-	66,514 감) 4,766	-	일부폐지

라.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마.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6360-4737) 및 중구 도시관리과(☎ 2260-1382)에 관련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남권유통단지 주변도로를 확충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

2. 도시계획시설(도로·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 설 명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1	74	25~55	보조간선도로	1,960	송파구 문정동 150-14	송파구 문정동 233-10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181	25	국지도로	1,325	송파구 가락동 660-2	송파구 문정동 135-7	일반 도로		건고 415 (86.9.23)	일부 구간 대로 1-74 편입으로 연장 축소
변경	대로	3	181	25	집산도로	814	송파구 문정동 150	송파구 문정동 135-7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411	20	집산도로	338	송파구 장지동 769-1	송파구 장지동 715-1	일반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송파구 장지동 233-5 일대	57,245	감) 21,695	35,550	서고 148호 (96. 6. 3)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7), 이주사업담당관(☎ 2171-2421), 송파구 도시정비과(☎ 410-3385)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변경 결정(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1번지 도시

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을 변경 결정(폐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폐지)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시장	도봉구 쌍문동 711	3,158.3	감)3,158.3	0	'80.12.5	쌍문제일종합시장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조서

위 치	면 적(m ²)	층수완화 내용	비고
도봉구 쌍문동 711	3,158.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0층이하)	

다.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폐지) 및 층수완화 조건

- (1) 건축계획 : 건폐율 59.98%이하
(건축면적 1,894.46m²)
용적률 392.80%이하
(건축연면적 20,330.39m²)
- (2) 공공기여방안 : 대지내 공지 542.68m²
(공공보행통로 386.68m², 완화차로 156m²)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76) 및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96)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변경 결정(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19-6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을 변경결정(폐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폐지)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시장	강서구 내발산동 719-6	1,745	감)1,745	0	'78.6.17	송화시장

나. 준주거지역 용적률완화 조서

위 치	면 적(m ²)	용적률완화 내용	비고
강서구 내발산동 719-6	1,737.7	450%이하→581.85%이하	

다.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폐지) 및 용적률완화 조건

- (1) 건축계획 : 건폐율 59.88%이하
(건축면적 1,040.58m²)
용적률 581.85%이하

(건축연면적 18,895.03m²)
지하6층/지상10층

- (2) 공공기여방안 : 대지내 공지 250.78m²
- 공개공지(법상 설치면적 121.64m² 제외) : 179.23m²

-공공보행통로 : 71.55㎡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76)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843)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광진구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화양지구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광진구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공공공지·도로)을 변경결정하여 화양동 122일대 화양동복합청사 전면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	광진구 화양동 122일대	833	증)66	899	2002.6.24	
변경	주 차 장	노 외 주차장	광진구 화양동 110-67일대	667	증) 9	676	2004.10.24	
변경	공공공지	-	"	2,454	감)68	2,386	2002.6.24	○ 능동로지구 : 64㎡ 감소 ○ 화양지구 : 4㎡ 감소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80	화양동 67-2	화양동 110-29	일반도로 (구도)	-	2002.6.24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180	화양동 67-2	화양동 110-29	일반도로 (구도)	-		○ 시·종점 변경없이 일부구간 위치조정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공공공지, 도로)) 및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공공공지, 도로)) 참조 : 생략(비치한 결정도와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8) 및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450-1433)에 관계결정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6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55조(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 등)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
3조(지정문화재)·제4조(문화재자료)·제6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을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시장

1. 문화재 지정내용

지정종별(지정번호)	지정명칭	수량	재질	조성연대	소재지(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09호)	금동석장두 (金銅錫杖頭)	1점	금 동	고려시대 (13~14세기)	서울시 관악구 신림11동 1707(호림박물관)	성보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10호)	곤여전도 (坤輿全圖)	1점	견본채색	조선말기	강서구 등촌2동 715 등촌 아이파크A 110동 1501호	이해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11호)	학림사 삼신불 괘불탱 (鶴林寺三身佛掛佛幀)	1폭	견본채색	1749년	노원구 상계4동 산 1번지 (학림사)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32호)	학림사 석불좌상 (鶴林寺石佛坐像)	1구	석 조	19세기말~ 20세기초		

2. 문화재 지정사유

□ 금동석장두(金銅錫杖頭)

비구가 지니는 석장(錫杖: Khakkhara)의 머리부분으로, 금동으로 되어 있으며 조성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석장의 머리 부분은 여의두 모양의 커다란 고리 형태로 고리 안에는 마치 연꽃줄기에서 뻗어나오는 듯한 연화대좌 위에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꼭대기에는 5층탑이 장식되어 있다. 삼존불상을 마치 거신광처럼 감싸는 듯한 여의두 모양의 커다란 고리 안에는 3개의 작은 고리가 남아있다. 큰 고리 안에 조각된 삼존상 중, 연꽃대좌에 앉은 불좌상은 두 어깨를 덮은 통견의를 걸쳤으며 외연부에 화염문이 새겨진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지니고 있다. 오른손은 축지인, 왼손은 가슴 위로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시무외인을 하고 있다. 본존불 좌상의 좌우에는 커다란 연봉오리와 리본에 매달린 악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좌우 대칭으로 묘사되어 있다. 좌우 협시 보살입상 역시 외연부에 화염문이 나타난 보주형의 두광을 지니고 연화 대좌 위에 서있으며 합장한 자세로 보

관을 쓰고 있으며, 뒷면에는 14개의 팔을 지닌 14비상 좌우에 신장상이 새겨져 있다.

이 금동석장두(金銅錫杖頭)는 비록 손잡이 부분은 결실되고 머리 부분만 남아 있지만 그 유례가 드문 것으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또, 내부에는 삼존불상을 비롯하여 다비상(多臂像) 및 신장상(神將像) 등이 조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략해진 표현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의두(如意頭) 모양의 큰 고리와 윗부분의 탑, 내부의 불상조각, 작은 고리(環) 등의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으로서, 고려시대 석장을 대표할 만한 희귀한 예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 곤여전도(坤輿全圖)

이 문화재는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坤輿全圖)」(1674년판)를 원본으로 하여 8쪽으로 그려낸 채색필사 병풍지도이다. 페르비스트의 원도는 1856년에 광동에서 재판을 냈으며, 조선에서는 이 광동판 곤여전도를 토대로 1860년에 해동중간본 판목을 제작한 바 있으나, 이 문화재는 해동중간본이 아니라 1674년 북경판을 원본으로 하여 채색 필사한 것이

다. 전라도 각 지역의 토지와 경작 현황이 기록된 종자들이 배접되어 있으나, 배접된 내용으로 정확한 시기 추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도 여백에 그려진 동물상의 털에 가해진 필선의 성근 양태와 일부 부정확한 형태 묘사, 갈색조의 색감, 정선의 동해 풍경 수파묘가 형식화된 물결 양식 등의 회화기법으로 보아 19세기 조선시대 작품으로 판단된다. 지도에 표현된 내용은 동반구에는 아세아·구라과·리미아(아프리카)·메카라니카주를 그렸고, 서반구에는 남북아메리카를 그렸다. 도면의 여러 곳에 지리적인 주기와 기괴한 동식물과 선박들을 그렸는데 이는 서구의 중세 이전부터의 전통적인 지리지식과 동양 고대로부터의 산해경을 위주로 한 세계지리 사상의 표현이다.

이 문화재는 남화인의 지도를 필사한 유일한 지도라는 점과 그 동안 기록으로만 전하던 1674년판 곤여전도라는 점에서 희귀성이 있다. 또한, 민간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필치로, 전문 화원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 학림사 삼신불 괘불탱
(鶴林寺三身佛掛佛幀)

이 괘불은 조선후기의 삼신불 괘불탱으로, 조성연대는 1749년이다. 현재 남아있는 화기에 의하면 1774년에 중수하여 원통암(圓通庵)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이전에 썼던 화기를 조사한 결과 ‘乾隆十四年己巳八月’이라는 화기가 확인되어 최초 조성연대는 1749년으로 보인다. 크기는 세로 443cm, 가로 256cm로 괘불로는 그리 크지 않은 작품인데, 폭 61.5cm의 비단을 4폭 이은 후 왼쪽 가장자리에는 29.5cm의 비단을 이어 마감하였으며, 배접지는 8점을 붙였다. 그림의 형식은 화려한 채운(彩雲) 아래에 법신(法身) 비로자나불, 왼쪽(향우측)에 보신(報身) 노사나불, 오른쪽에 화신(化身) 석가불 등 권속 없이 나

란히 서있는 3구의 삼신불만을 배치한 간단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로자나삼신불을 주제로 한 괘불은 18~9세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1735년 봉선사 괘불을 비롯하여 1832년 흥천사 괘불, 1868년 백련사 괘불, 1862년 청계사 괘불, 1858년 천축사 괘불 등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봉선사 괘불에는 삼신불 외에도 보살과 제자, 청중 등이 더 묘사되었으며 흥천사와 백련사 괘불은 노사나불이 보살형이 아닌 불형(佛形)이며 아난과 가섭,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이 첨가되었고, 청계사 괘불 역시 삼불형(三佛形)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학림사 괘불은 이 중에서 형식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노사나불이 보살형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삼신불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불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있는 괘불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조선후기 서울·경기지역 괘불의 특징적인 양식을 반영하는 작품으로서 시 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학림사 석불좌상(鶴林寺石佛坐像)

학림사 석불좌상은 커다란 두부에 불신이 왜소하며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없는 평평한 체구와 얼굴을 보여준다. 머리 위의 육계 부분은 밋밋하고 계주도 평평하게 새겨져 있다. 크고 네모난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얇게 새겨졌고 입은 가늘게 흠을 파듯이 음각되어 있으며 얼굴 양쪽에 붙어있는 표현된 귀가 짧다. 양어깨는 좁고 둥글며 대의를 통견식으로 입었다. 옷소매 밖으로 나온 양손은 배에 붙어있는데 작고 어색하게 조각되어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 부분은 얇고 손상되었다. 조선시대의 토속화된 석불조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조선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석불의 토속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므로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정일자 : 서울시보 게재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02-3707-9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 실시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28(2005.8.4)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06-18(2006.3.23)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87호(2006.4.13)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된 관악구 봉천동 1712-2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봉헌배수지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의거 도시계획시설(수도)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 가. 사업시행위치 : 관악구 봉천동 1712-22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
- 다. 사업의 명칭 : 봉헌배수지 건설공사
- 라. 사업 규모 : 배수지용량 2,500m³
- 마. 사업 면적 : 2,581.1m²
- 바.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 사업의 기간 : 2004. 12~2006. 7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전화 390-7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헌배수지 건설 도시계획사업의 사용·수용할 토지조서

가. 도시계획사업 토지조서(총괄)

구 분		편입면적(m ²)	비 고
배수지건설	도시계획시설(수도)	2,581.1	배수지 및 진입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된 토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실제이용현황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5필		2,581.1				
1	관악구 봉천동	1712-22	공원	1,612.0	수도(배수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재정경제원	
2	관악구 봉천동	1712-24	공원	300.1	수도(현황도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재정경제원	
3	동작구 상도동	산64-296	공원	4.0	현황도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재정경제원	
4	동작구 상도동	산64-292	공원	590.0	현황도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5	동작구 상도동	산64-295	공원	75.0	현황도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① 결정취지

- 주교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7호(2005.3.17)로 구역결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④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주교동 일대	100,210	-	100,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7호 (2005. 3. 1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구분명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0,210	-	100,210	• 변경사항 없음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0,210	-	100,21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동아일보사앞 ~청계천6가	67,200 (3,772)	2,800 (307)	양측12m	서고164 ('82.4.22)	청계천지구
기정	②	미관지구	중심지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64,800 (2,688)	2,700 (266)	양측12m	서고164 ('82.4.22)	을지로지구
기정	③	미관지구	중심지	북정동 ~종로4가	21,000 (2,899)	900 (212)	양측12m	서고164 ('82.4.22)	북정지구
기정	④	미관지구	중심지	장충동 ~퇴계로5가	13,200 (3,193)	1,000 (246)	양측12m	서고164 ('82.4.22)	삼일로지구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㉔	방화지구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44,496 (3,772)	건고727 (63.12.13)	노선
기정	㉕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2,688)	건고727 (63.12.13)	노선
기정	㉖	방화지구	퇴계로~원남동로타리간	29,088 (2,899)	건고727 (63.12.13)	노선
기정	㉗	방화지구	퇴계로~효제동간	27,960 (3,193)	건고727 (63.12.13)	노선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1)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0	40	주간선 도로	1,450 (303)	종로5가	장충동	일반 도로	-	총고722 (36.12.26)	-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2,400 (367)	시청	동대문운동장	일반 도로	-	서고 (77.5.3)	-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600 (244)	연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
기정	중로	3	-	12~ 13.5	집산도로	5,390 (371)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건고177 (62.12.8)	-
기정	소로	3	128	6	국지도로	220	주교동 63-2	을지로4가 125	일반 도로	-	건고432 (63.7.1)	-
기정	소로	3	129	6	국지도로	172	주교동 230	주교동 313-1	일반 도로	-	건고432 (63.7.1)	-
기정	소로	3	130	6	국지도로	46	방산동 102-2	방산동 31-2	일반 도로	-	건고432 (63.7.1)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118	주교동 5	주교동 33-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34	주교동 36-3	주교동 48-1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80	주교동 112	주교동 122-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74	주교동 213	주교동 188-1	일반 도로	-	-	지하 주차장 중복 결정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3-1	•도로신설(폭원: 6m, 연장: 118m)	•기개설된 현황도로의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소로3-2	•도로신설(폭원: 4m, 연장: 34m)	•이면부 도로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	소로2-1	•도로신설(폭원: 8m, 연장: 80m)	•기개설된 현황도로의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소로2-2	•도로신설(폭원: 8m, 연장: 74m)	•기개설된 현황도로의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주교동 212일대	-	증)1,670	1,670	-	소공원, 도로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 설	주차장	•신설 •면적: 1,670㎡	•특별계획구역 및 조업주차 공간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

2) 공간시설(광장, 공원 등)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을지4가광장	교통광장	을지로4가 일대	13,300 (3,014)	-	13,300 (3,014)	내고 23 (52.3.25)	상업 지역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소공원1	소공원	주교동 98-4일대	-	증)969	969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소공원2	소공원	주교동 212일대	-	증)882	882	-	지하부 주차장과 중복결정
신설	③	소공원3	소공원	을지로4가 111일대	-	증)493	493	-	
신설	④	소공원4	소공원	방산동 4-119	-	증) 76	76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①	소공원1	•신설 •면적: 969㎡	•방산시장주변(청계천변) 소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②	소공원2	•신설 •면적: 882㎡	•지하부 주차장 시설 결정 및 공공보행통로, 소공원 조성
③	소공원3	•신설 •면적: 492㎡	•지하부 주차장 시설 결정 및 공공보행통로, 소공원 조성
④	소공원4	•신설 •면적: 76㎡	•성계묘주변 소공원 확충으로 도심휴게공간 조성

3)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방산시장	대규모 점포	주교동 19번지의 2필지	90,684	감)81,812	8,872	상업지역(구적오차 면적정정)

4) 방재시설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청계천	지방1급, 2급 하천	종로구 서린동 148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	-	5.76km 1급: 1.31km 2급: 4.45km (0.37km)	19~ 113m	-	서고423 (03.12.26)	상업 지역

3. 획지에 관한 계획

가. 획지계획

구 분	지 칙 내 용	비고
획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의 입지특성 및 가로조직을 근거로 하여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로 설정함 • 수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경우 획지내 필지들은 개별건축이 불가능함 • 각각의 획지들은 최대개발규모이내에서 공동개발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지침(지정)에 의한 일단의 대지 및 공동개발 지침이 없는 대지를 포함하여 공동개발이 가능함 	

구 분	지 칩 내 용	비고													
최대/최소 개발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다른 최대개발규모에 속해 있는 필지들간의 공동개발의 경우 최대개발규모가 가장 큰 필지의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소개발규모는 100㎡로 제한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최대개발규모</th> <th>적 용 대 상</th> </tr> </thead> <tbody> <tr> <td>A-1</td> <td>3,000㎡ 이하</td> <td rowspan="3">이면부</td> </tr> <tr> <td>A-2</td> <td>2,000㎡ 이하</td> </tr> <tr> <td>A-3</td> <td>1,000㎡ 이하</td> </tr> <tr> <td>A-4</td> <td>현황유지</td> <td>이면부 대형필지</td> </tr> </tbody> </table>		구 분	최대개발규모	적 용 대 상	A-1	3,000㎡ 이하	이면부	A-2	2,000㎡ 이하	A-3	1,000㎡ 이하	A-4	현황유지	이면부 대형필지
	구 분		최대개발규모	적 용 대 상											
	A-1		3,000㎡ 이하	이면부											
	A-2		2,000㎡ 이하												
A-3	1,000㎡ 이하														
A-4	현황유지	이면부 대형필지													
공동개발 (지정/자율적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적합하게 공동개발을 하여야 한다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필요에 따라 지정된 필지 및 획지를 포함하여 최대개발규모내에서 최소개발규모이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4.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위 치	구분	권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권장용도(전층)	예시용도		
방산 시장 블럭	시장	UC-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간선 가로변	U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건축관련 부자재 도·소매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청계천 변	U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이면부	UC-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특수포장 및 인쇄관련 업종 	-

주) 건축허가시 권장용도 이행을 담보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권장용도(예시용도포함)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당해 해당용도에 한함

나. 용적률 계획

적용대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기준용적률 400%	400%~600%	800% 이하	

다.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칙 내 용	비 고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건폐율 60%이하 • 건폐율완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적 용 지 역</th> <th>완화조건</th> <th>완화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높이20m(5층)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이하 지역</td> <td rowspan="2">권장용도를 수용한 경우</td> <td>건폐율 80%이하</td> </tr> <tr> <td>높이20m(5층)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초과~1,000㎡이하 지역</td> <td>건폐율 70%이하</td> </tr> <tr> <td>높이30m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이하 지역</td> <td></td> <td></td> </tr> <tr> <td>간선가로변(중구)</td> <td>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할 경우</td> <td>건폐율 70%이하</td> </tr> <tr> <td>문화재양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td> <td>권장용도를 수용한 경우</td> <td>건폐율 80%이하</td> </tr> </tbody> </table>	적 용 지 역	완화조건	완화기준	높이20m(5층)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이하 지역	권장용도를 수용한 경우	건폐율 80%이하	높이20m(5층)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초과~1,000㎡이하 지역	건폐율 70%이하	높이30m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이하 지역			간선가로변(중구)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할 경우	건폐율 70%이하	문화재양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권장용도를 수용한 경우	건폐율 80%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 용 지 역	완화조건	완화기준																
	높이20m(5층)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이하 지역	권장용도를 수용한 경우	건폐율 80%이하																
	높이20m(5층)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초과~1,000㎡이하 지역		건폐율 70%이하																
	높이30m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이하 지역																		
	간선가로변(중구)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할 경우	건폐율 70%이하																
문화재양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권장용도를 수용한 경우	건폐율 80%이하																	

라. 용적률 및 건폐율 연동계획

구 분	지 칙 내 용					비 고	
용적률 /건폐율 계획	위치	적 용 지 역	건폐율	용 적 률			800% 이하
				기 준	허 용	상 한	
	C-1	창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이하	400%	600%이하	800% 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창계천변)	70%이하		600%이하		
	C-3	이면부일대	70%이하		500%이하		
	C-4	이면부 일대	80%이하		400%이하		
C-5	문화재양각지역 (성재묘)	80%이하	600%이하				

마. 건축물 높이계획

1) 높이계획

구 분	높이 제한	적 용 대 상	비 고
H - 1	최고높이 : 90m 이하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 I, II, III (70m+20m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선제한배제 • 경미한 변경으로 최고 높이 이하완화불가
H - 2	최고높이 : 70m 이하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H - 3	최고높이 : 30m 이하	이면부	
H - 4	최고높이 : 20m(5층)이하	이면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는 대지는 이를 동시에 적용하되, 문화재 위원회 현상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높이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5. 기타에 관한 사항

가. 배치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구 분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건축한계선	1m	• 주도로의 도로 기능확보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2m	• 이면부 4m미만 이하의 도로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
	3m	• 통행량이 많고 차량소통의 원활한 유도가 필요한 지역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3m 후퇴
		•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25m이상 도로)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5m	• 대규모 필지, 특별계획구역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 중앙도로 원활한 소통 및 기능 회복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5m 후퇴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전면공지	•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 보행통로확보 필요구간(방산시장)	•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조성시 위치 지정
	• 주요 간선가로 공개공지 설치의무 건물	
공공보행통로	• 보행연결 필요 구간	• 폭 4m 이상으로 조성

다. 교통처리계획

제어요소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기 타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가로변 (청계로, 배오개길, 훈련원길, 을지로)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내 차량출입 불허	
부설주차장 완화	• 간선가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에 의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대지 • 지침에 의해 차량출입은 가능하나 개발시 차에 의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대지	• 관할 구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설치의무를 100% 면제받을 수 있음 (단, 설치비용은 관할 구의 협의를 통하여 완화 받을 수 있음)	• 주차장법 제19조/령제8조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신 설	특별계획구역Ⅰ	중구 주교동 118-1 일대	6,285.6㎡
신 설	특별계획구역Ⅱ	중구 주교동 227 일대	6,172.5㎡
신 설	특별계획구역Ⅲ	중구 을지로4가 106-3 일대	2,888.8㎡

2) 계획내용

구 분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Ⅰ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Ⅱ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Ⅲ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적률 계 획	기준/허용 용적률	400%이하 / 600%이하	
	상한 용적률	800%이하 허용용적률 × (1+1.3a) ※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건 폐 율	60% 이하		
높 이	70m+20m(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 창고,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예시용도 • 업무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예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업종 • 건축관련 부자재 도·소매업종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변 소공원(선형공원) 확보 (969㎡) • 특별계획구역Ⅱ와 구분되는 도시계획도로 설치 (도로중심선에서 4m후퇴) ※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계획구역Ⅰ·Ⅲ와 구분되는 도시계획도로 설치 (도로중심선에서 4m후퇴) • 특별계획구역Ⅲ와 연계되는 지하주차장 설치(중복결정) • 지하주차장 지상부분 소공원 (882㎡) • 소공원지하 공공노외주차장 설치(규모 및 주차대수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내용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계획구역Ⅱ와 구분되는 도시계획도로 설치 (도로중심선에서 4m후퇴) • 특별계획구역Ⅱ와 연계되는 지하주차장 설치(중복결정) • 지하주차장 지상부분 소공원 (493㎡) • 소공원지하 공공노외주차장 설치(규모 및 주차대수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내용에 따름)

구 분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I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II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III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음	※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음
건축한계선	• 배오개길 3m 후퇴 • 내부도로 3m 후퇴	• 배오개길 3m 후퇴 • 내부도로 3m 후퇴	• 배오개길 3m 후퇴 • 내부도로 3m 후퇴 • 을지로변 3m 후퇴
차량출입 금지구간	• 청계천변 • 도시계획도로 출입구를 제외한 구역	• 도시계획도로 출입구를 제외한 구역	• 을지로변 • 도시계획도로 출입구를 제외한 구역

※ 방산시장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추진시 철거재개발방식으로 추진가능

마.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 인센티브 적용 기준표

구분	계 획 요 소	완화조건	완 화 내 용	비 고	
용 적 륜	획지 계획	획지/획지계획을 포함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05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05	개방형 a=1.0 피로티형 a=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청계천변 1층부 가로변 오픈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	
		청계천변 고층부 후퇴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청계천변 개방형 화장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법적규모 이하 건축물 신축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지하철 입구 건물내 설치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구분	계 획 요 소		완화조건	완 화 내 용			비 고
용 적 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1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 × 0.2			
<p>•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같은 공지에서 대지내공지 항목을 중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p>							
<p>□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교 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p> <p>□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2) 및 중구 건축과(☎ 2260-1391)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p>				<p>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로 같음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p>			
<p>◇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p> <p>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p>				<p>□ 결정취지</p> <p>○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서울 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7) 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 -76호(2005.3.17)호로 구역변경되어 그간의 여건변화를 도시관리계획에 반 영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 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p>			
<p>□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p> <p>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p> <p>가.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p>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대학로·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효제동 일대	394,280	감) 10,413	383,867	면적감소	
변 경	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종로4·5가 일대	288,545	증) 11,102	299,6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6호 (2005. 3. 17)	

나.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학로·울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효제동 일대	•구역면적 감소 : 10,413㎡	•재정비 구역과 연결한 종로6가동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도심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분리
변경	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종로4·5가 일대	•구역면적 증가 : 11,102㎡	•대학로·울곡로제1종지구단위계획중일부 (10,413㎡) 및 신규지역(689㎡)을 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하여 청계천 주변 및 종로6가일대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8,545	11,102	299,647	종로6가동 일부 포함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288,545	11,102	299,64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자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종로2가 ~동대문	57,600 (18,956)	2,400 (1,438)	양측12m	서고164 (82.4.22)	종로지구
기정	②	미관지구	중심지	동아일보사앞 ~청계천6가	67,200 (9,968)	2,800 (784)	양측12m	서고164 (82.4.22)	청계천지구
기정	③	미관지구	중심지	묵정동 ~종로4가	21,000 (6,556)	900 (499)	양측12m	서고164 (82.4.22)	묵정지구
기정	④	미관지구	중심지	쌍림동 ~연건동	42,400 (1,866)	1,400 (68)	양측20m	서고73 (82.2.18)	대학로지구
기정	⑤	미관지구	중심지	내자동 ~광희로2가	114,000 (4,107)	4,750 (331)	양측12m	서고164 (82.4.22)	울곡로지구

※ ()는 지구단위구역내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㉞	방화지구	예지동 4번지 일대(동대문시장)	103,705	건고783(64.2.12)	집단

※ ()는 지구단위구역내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1)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7	40-47	주간선 도로	4,000 (1,117)	서대문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	서고172 (77.6.1)	-
기정	광로	3	10	40	주간선 도로	1,450 (245)	종로5가	장충동	일반도로	-	총고722 (36.12.26)	-
기정	광로	3	66	40	주간선 도로	1,500 (72)	종로5가	혜화동로타리	일반도로	-	건고145 (78.6.15)	-
기정	대로	2	6	30	주간선 도로	2,600 (418)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	내고23 (53.3.25)	-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600 (410)	연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도로	-	건고177 (62.12.8)	-
기정	중로	1	175	20	집산 도로	2800 (58)	세종로	충신동 (대2-6)	일반도로	-	서고39호 (78.2.10)	-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600 (253)	종로6가 청계천변	충신동	일반도로	-	건고177호 (62.12.8)	-
기정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1,038)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건고177 (62.12.8)	-
기정	소로	1	122	10	국지 도로	120	인의동 28-14	인의동 48-6	일반도로	-	건고432 (63.7.1)	-
기정	소로	3	130	6	국지 도로	122	종로6가 16-1	종로6가 130-1	일반도로	-	건고432 (63.7.1)	-
신설	소로	2	1	9	국지 도로	112	종로5가 503-24	종로5가 231-1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35	연지동 120-5	종로5가 122-1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361	효계동 175-1	효계동 248-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41	6	국지 도로	19	예지동 263	예지동 264	일반도로	-	건고432 (63.7.1)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270 (80)	연지동 168	종로5가 122-1	일반도로	-	건고432 (63.7.1)	-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281 (89)	연지동 168	종로5가 124-4	일반도로	-	건고432 (63.7.1)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가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125	종로5가 246-5	종로5가 279-2	일반도로	-	-	구적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36	종로5가 279-1	종로5가 246-5	일반도로	-	-	-
가정	소로	3	4	4	국지 도로	16	종로5가	종로5가	일반도로	-	서고20호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	소로3-2	•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폭원 : 6m. 연장 : 89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3-	소로1-1	•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폭원 : 10m. 연장 : 136m)	• 일체적 정비를 위한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 도로 선형변경
-	소로3-3	• 도로신설 (폭원 : 6m. 연장 : 35m)	•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 및 이면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노선변경
-	소로3-1	• 도로신설 (폭원 : 6m. 연장 : 361m)	• 종로변 이면부의 도로확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	소로2-1	• 도로신설 (폭원 : 9m. 연장 : 112m)	• 특별계획구역과 연결하는 남북간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노선신설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종로6가 289-3 일대	4,404	-	4,404	서고 281(85.4.26)	시장 중복결정 ¹⁾
신설	②	주차장	종로5가 413 일대		증)2,328	2,328		소공원 중복결정

1) 결정내용 (시장·주차장 중복결정)

- 주차장 : 지하 2,3층 7,876㎡(각층 3,938㎡ × 2층), 주차빌딩 (지하1층~지상6층) 2,105㎡ (각층 300.75㎡ × 7층)
- 시 장 : 지하1층 : 3,322㎡, 지상1층~5층 : 5,209㎡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②	주 차 장	• 신설 • 면적 : 2,328㎡	• 특별계획구역 및 조업주차 공간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위 치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종로6가 289-58	-	-	종로6가		56,000 (7,348)	서고287 (81.7.30)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종로4가 광장	교통광장	종로4가 일대	13,000 (10,551)	-	13,000 (10,551)	내고 23 (52.3.25)	상업지역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인의공원	어린이공원	인의동 48-57	3,230	-	3,230	총고 208 (40.3.12)	-
신설	②	어린이공원1	어린이공원	종로6가 82-1 일대	-	증) 2,861	2,861	-	-
신설	③	어린이공원2	어린이공원	종로5가 413 일대	-	증) 2,328	2,328	-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④	소공원1	소공원	종로5가 120-14 일대	-	증) 69	69	-	-
신설	⑤	소공원2	소공원	인의동 46-1 일대	-	증) 231	231	-	-
신설	⑥	소공원3	소공원	종로4가 2-1 일대		증) 238	238	-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결장내용	결 정 사 유
②	어린이공원1	•신설 •면적: 2,861㎡	•특별계획구역내 시민의 휴식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중심거점 공 원 조성
③	어린이공원2	•신설 •면적: 2,328㎡	•특별계획구역내 주보행동선인 소로1-1과 주변도로간의 연계성강 화로 이용효율 증진 도로, 도 심내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④	소공원1	•신설 •면적: 69㎡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소공원 조성
⑤	소공원2	•신설 •면적: 231㎡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시민들의 일시적 휴양공간 조성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결장내용	결 정 사 유
⑥	소공원3	•신설 •면적 : 238㎡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시민들의 일시적 휴양공간 조성

3)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광장시장	정기시장	예지동 3-2 일대	16,529	증)12,968	29,497	내고 244 ('54.9.29)	상업지역 (구적오차정정)
기 정	②	동대문 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종로6가 289-57 일대	2,193	-	2,193	서고 716 ('84.12.1)	상업지역
기 정	③	동대문 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종로6가289-3 일대	4,404	-	4,404	서고 281 ('85.4.26)	주차장 중복결정 ¹⁾

1) 결정내용 (시장·주차장 중복결정)

- 주차장 : 지하 2,3층 7,876㎡(각층 3,938㎡ × 2층), 주차빌딩 (지하1층~지상6층) 2,105㎡ (각층 300.75㎡ × 7층)
- 시 장 : 지하1층 : 3,322㎡ , 지상1층~5층 : 5,209㎡

4) 방재시설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 (km)	폭 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중 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청계천	지방1급, 2급 하천	종로구 서린동 148	성동구 마장동 신담철교	-	5.76km 1급 : 1.31km 2급 : 4.45km (1.03km)	19~113m	-	서고423 ('03.12.26)	상업 지역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3. 획지에 관한 계획

가. 획지계획

구 분	지 칙 내 용	비고
획 지	• 필지의 입지특성 및 가로조직을 근거로 하여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로 설정함 • 수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경우 획지내 필지들은 개별건축이 불가능함 • 각각의 획지들은 최대개발규모이내에서 공동개발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지침(지정)에 의한 일단의 대지 및 공동개발 지침이 없는 대지를 포함하여 공동개발이 가능함	
최대/최소 개발규모	• 서로 다른 최대개발규모에 속해 있는 필지들간의 공동개발의 경우 최대개발규모가 가장 큰 필지의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한다	

구 분	지 칩 내 용	비 고													
최대/최소 개발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소개발규모는 100㎡로 제한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최대개발규모</th> <th>적용대상</th> </tr> </thead> <tbody> <tr> <td>A-1</td> <td>3,000㎡ 이하</td> <td rowspan="2">간선가로변 및 청계천변</td> </tr> <tr> <td>A-2</td> <td>2,000㎡ 이하</td> </tr> <tr> <td>A-3</td> <td>1,000㎡ 이하</td> <td rowspan="2">이면부</td> </tr> <tr> <td>A-4</td> <td>현황유지</td> </tr> </tbody> </table>	구 분	최대개발규모	적용대상	A-1	3,000㎡ 이하	간선가로변 및 청계천변	A-2	2,000㎡ 이하	A-3	1,000㎡ 이하	이면부	A-4	현황유지	
	구 분	최대개발규모	적용대상												
	A-1	3,000㎡ 이하	간선가로변 및 청계천변												
	A-2	2,000㎡ 이하													
	A-3	1,000㎡ 이하	이면부												
A-4	현황유지														
공동개발 (지정/자율적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적합하게 공동개발을 하여야 한다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필요에 따라 지정된 필지 및 획지를 포함하여 최대개발 규모이내에서 최소개발규모이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4.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위 치	구분	권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권장용도(전층)	예시용도		
혜화 경찰서 블럭	종로변	U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금속 도·소매 관련 업종 의료관련업종(약국, 한의원, 의료기판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이면부	U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 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부 교육청 블럭	종로변	U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 용도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관련업종(약국, 한의원, 의료기판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이면부	U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 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동대문 시장 / 광장시장 블럭	시장	UC-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간선 가로변	U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시장 - 주단, 포목, 전통의류 도·소매업종 	

위 치	구분	관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관장용도(전층)	예시용도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블럭	중로변	U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 동대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창고,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청계천 변	UC-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수용품 및 의류관련 도·소매 업종 -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
	이면부	UC-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

주) 건축허가시 권장용도 이행을 담보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권장용도(예시용도포함)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당해 해당용도에 한함

나. 용적률 계획

적용대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기준용적률 400%	400%~600%	800% 이하	

다.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칩 내 용			비 고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건폐율 60%이하 • 건폐율완화 			국도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 용 지 역	완 화 조 건	완화기준	
	높이20m(5층)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이하 지역	권장용도로 수용한 경우	건폐율 80%이하	
	높이20m(5층)이하지역에서 대지면적 500㎡초과~1,000㎡이하 지역		건폐율 70%이하	
	높이30m이하 지역에서 대지면적 1,000㎡이하 지역		건폐율 70%이하	
간선가로변(종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라. 용적률 및 건폐율 연동계획

구 분	지 칙 내 용					비 고
	위 치	적용지역	건폐율	용 적 률		
기 준				허 용	상 한	
용적률/ 건폐율 계획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60% 이하	400%	600% 이하	800% 이하
	C-2	도시기반시설 확보지역 (청계천 및 간선가로변)	70% 이하		600% 이하	
	C-3	이면부일대	70% 이하		500% 이하	
	C-4	이면부 일대 (광장시장 블록 제외)	80% 이하		400% 이하	

마. 높이계획

구분	높 이 제 한	적 용 대 상	비 고
H-1	최고높이: 90m 이하	동대문시장 블록, 청계천변/간선가로변, 대학천 특별계획구역, 종로6가 특별계획구역(70m+20m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선제한배제 • 경미한 변경으로 최고높이 이하완화불가
H-2	최고높이 : 70m 이하	동대문시장블록을 제외한 청계천변/간선가로변	
H-3	최고높이 : 50m 이하	이면부 대형필지(동대문경찰서, 연강홀)	
H-4	최고높이 : 30m 이하	이면부	
H-5	최고높이 : 20m(5층) 이하	이면부(광장시장블록 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는 대지는 이를 동시에 적용하되, 문화재 위원회 현상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높이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5. 기타에 관한 사항

가. 배치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구분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건축한계선	3m	• 통행량이 많고 차량소통의 원활한 유도가 필요한 지역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3m 후퇴
		•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25m이상 도로)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5m	• 대규모 필지, 특별계획구역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10m	• 특별계획구역 간선가로변 / 청계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후퇴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전면공지	•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 주요 간선가로 가각부	•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조성시 위치 지정
	• 주요 간선가로 공개공지 설치의무 건물	
공공보행통로	• 보행연결 필요 구간	• 폭 4m 이상으로 조성

다. 교통처리 계획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기타
차량출입금지구간	• 간선가로변 (칭계로, 종로, 창경궁로, 대학로, 훈련원로, 배오개길, 흥인지문로)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내 차량출입 불허	
부설주차장완화	• 간선가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의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대지 • 지침에 의해 차량출입은 가능하나 개발시차에 의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대지	• 관할 구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설치의무를 100% 면제받을 수 있음 (단, 설치비용은 관할 구의 협의를 통하여 완화 받을 수 있음)	• 주차장법 제19조령제8조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신설	특별계획구역(종로6가)	종로6가 82-1일대 12,700.1㎡
신설	특별계획구역(대학천일대)	종로5가 256일대 15,368.8㎡

2) 계획내용

구분	종로6가 특별계획구역	대학천일대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적률 계획	기준/허용 용적률	400%이하 / 600%이하
	상한 용적률	800%이하 허용용적률 × (1+1.3a) ※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건폐율	60% 이하	
높이	70m+20m(도시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 문화재양각 동시적용	90m

구 분	종로6가 특별계획구역	대학천안대 특별계획구역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탁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 창고,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 업무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예시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예시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예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련업종(약국, 한의원, 의료기판매) • 상업가로관련업종 (소매/식품/기념품/커피전문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용용품관련 도·소매 업종 • 모사·실 등을 활용한 도·소매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업종 • 서점관련 업종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설치 (2,861㎡) ※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설치 + 지하주차장 (2,328㎡) - 중복결정 • 중앙10m이상 도시계획도로 설치 • 특별계획구역 좌측에 폭9m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 어린이공원 지하 공공노외주차장 설치(규모 및 주차대수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내용을 따름) ※ 도시기반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음 	
	건축한 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변 10m • 율곡로변 5m • 이면부 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변 3m • 청계천변 10m • 특별계획구역 좌측 3m
	차량출입 금지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변 • 율곡로 일정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변 • 청계천변

※ 종로6가 및 대학천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추진시 철거재개발방식으로 추진가능
 ※ 대학천 특별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소로1-1)는 향후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수립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가능(다만 입체구역으로 특정되는 지하부분의 용도는 주차장(차량통행을 위한 차로로 한정)으로 제한)

마.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 인센티브 적용기준표

구분	계 획 요 소		완화조건	완 화 내 용	비 고
용 적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획지/획지계획을 포함한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05	
률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개방형 a=1.0

구분	계 획 요 소		완화조건	완 화 내 용	비 고	
용 적 률	대지내 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피로티형 a=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청계천변 1층부 가로변 오픈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청계천변 고층부 후퇴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청계천변 개방형 화장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법적규모 이하 건축물 신축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지하철 입구 건물내 설치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대지면적) × 0.1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X 0.3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 × 0.2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같은 공지에서 대지내공지 항목을 중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로4·5가 제1종지 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input type="checkbox"/>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2) 및 종로구 도시계획과(☎ 731-141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99호

기부금품 모집허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외 2개 기관에 대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허가 내역

허가번호	모 집 자	소 재 지	모집목적	모집금액	모집기간	모집지역	모 집 방 법
제2006-16호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이 은 화)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빈곤층 자립지원 사업	1억6천4백만원 (현금)	2006. 5. 1~ 2007. 4.30	서울특별시, 수도권	모금함 설치, 거리·매장을 통한 모금 등
제2006-17호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 득 린)	마포구 공덕동 456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돕기	3억원 (현금)	2006. 5. 1~ 2007. 4.30	전 국	방송매체를 통한 모금 및 ARS 모금 등
제2006-18호	주식회사 SBS (안 국 정)	양천구 목동 920	국내 희귀병환자 돕기	5억원 (현금)	2006. 5. 1~ 2007. 4.30	전 국	통화기부금 (ABS 모금)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02-6360-4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0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지정 검토종별	지정예정명칭	수량	재질	조성연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개운사 감로도	1폭	견본채색	1883년	성북구 안암5가 157 개운사	대한불교 조계종 개운사	
	개운사 신중도	1폭	견본채색	1870년(추정)			
	개운사 팔상도	1폭	견본채색	1883년			
	개운사 대웅전 지장시왕도	1폭	견본채색	1870년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상	1구	목조개금	고려(13세기경)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구	금동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성북구 안암5가 7보타사		

<p>2.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p> <p>3. 의견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화 : (02) 3707-9438 ② 팩스 : (02) 3707-9449 ③ 우편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성북구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화 : (02)920-3410 ② 우편 : (136-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p>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02-3707-9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첨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p> <p><input type="checkbox"/> 개운사 감로도</p> <p>이 감로도는 19세기 중엽 이후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행한 감로왕도의 전형적인 도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성 당시 불교의 재의식 장면을 비롯하여 서민들의 생활상 등 수록재의식과 생활상을 충실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감로도는 현재 수락산 감로도(1868년)를 비롯하여 경국사 감로도(1887년), 불암사 감로도(1890년), 봉은사 감로도(1892), 청룡사 감로도(1898년), 보광사 감로도(1898년) 등에 남아있는데, 이 작품은 특히 다양한 인물들의 표현과 생동감있는 자세 등의 연출로 인해 화면 전체가 생기있는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30여명에 이르는 상공들의 시주로 제작된 불화로써 당시 왕실에서의 불화발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운사 신중도</p> <p>이 불화는 화기에 조성연대는 없지만 양식적 특징과 조성화원으로 미루어볼 때 함께 봉안되어 있는 지장시왕도(1870년)와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부중과 천룡팔부를 한 폭에 묘사한 형식이라든가 산신과 조왕신이 위태천의 협시로 등장하는 점, 주악천녀 등의 등장은 19세기 신중</p>
--	--

탱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존상의 세밀한 표현과 균형을 이루는 구성과 더불어 화사의 필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

□개운사 팔상도

이 불화는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화면 분할식 불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 화면을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린 것이다. 원색의 남용과 일부 팔상장면의 생략, 화면 분할식 구도 등 18세기 팔상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19세기 팔상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서 서울 지역에 예가 많지 않은 팔상도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大虛體訓, 金谷永煥, 漢峰(蒼)曄 등 19세기후반 서울·경기지역 화승의 새로운 도상과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개운사 대웅전 지장시왕도

이 불화는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 화승인 慶船堂應釋과 제자들이 그린 지장시왕도로서, 선악동자를 함께 그린 지장시왕도 형식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런 형식은 모두 慶船堂應釋과 그 제자들이 그린 것으로서 흥천사 지장시왕도(1876년), 정수사 지장시왕도(1878년), 봉림사 지장시왕도(1883년), 경국사 지장시왕도(1887년), 백련사 지장시왕도(1888년) 등에서도 볼 수 다. 그 중 개운사 불화는 가장 선구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난히 가늘고 긴 눈과 아주 작은 입 등 얼굴 한 가운데로 물려있는 이목구비라든가 놀란 듯한 동그란 눈동자와 좁은 미간, 눈 주위와 코, 뺨 부분에 음영을 표현하여 얼굴의 골격을 강조한 점은 다른 지역의 불화와 구별되는 서울·경기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상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었던 축봉사의 아미타불좌상으로 조성된 불상으로, 13세기로 추정되는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하여 장곡사 약사여래상(1346년), 문수사 불상, 고산사 소불상 등과 유사한 도상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해 하한이 1322년에서 상한이 1274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년작품으로, 현존하는 고려 최고의 목조불상이자 고려후기 불상양식을 연구하는데 절대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비록 대좌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불상으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타사 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드물게 남아있는 조선초기의 유희좌보살상으로 보물 제415호로 지정된 1501년 기림사 유희좌 건칠보살좌상과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각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양식적으로 볼 때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경의 불상들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으로, 고려 말 조선초의 윤왕좌·유희좌상의 양식적 계보를 잇는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 이에 시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1호

2006년도 지하철9호선관련 건축물미술 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지하철9호선관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p>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p> <p>가. 심의일시 : 2006. 4. 26(수) 나. 심의장소 : 시청별관1동 10층회의실 다. 심의작품 ○ 1건 3작품 (벽화3) 라. 심의결과 ○ 조건부 승인 : 1작품(벽화1작품) □ 미술장식품별심의결과</p>				<p>※ 24작품 모두 작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여 끝까지 책임있는 작품설치가 되도록 할 것. ○ 재 심 : 2작품(벽화2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과 (☎ 02)3707-94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사 유	신 청 인
908	서울시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	벽화	한국의 소리	재심	작품성 부족 작품 완성후 작가명을 필히 표시하여 작가의 책임있는 작품설치가 되도록 할 것.	서울시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910		벽화	한강	재심		
912		벽화	아름다운 상상	조건부승인		
<p>◆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2호 2006년도 제9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4조의2·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6 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p> <p>□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p>				<p>가. 심의일시 : 2006. 4. 28(금) 나. 심의장소 : 시청별관1동 12층회의실 다. 심의작품 ○ 21건 34작품 (조각30, 회화4) 라. 심의결과 ○ 승 인 : 31작품(조각27, 회화4) ○ 재 심 : 3작품(조각3)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과 (☎ 02)3707-94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사 유	신 청 인
1	용산구 한강로3가 40-581번지	조각	나무술비빔	승인		용산구 한남동 721-23 한강로지역주택조합장 박명호
2	종로구 인의동 48-2호 외 1필지	조각	흐름을 넘어	승인		종로구 인의동 112-1 동원화관 12층 (주)태승플래닝 강중수
3-1	중랑구 상봉동 101외 1필지	회화	나의추억속에서 -20601	승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1 5층(주)늘푸른사회 최광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1 상록빌딩 2층 주플로 이용일
3-2		회화	나의추억속에서 -20611	승인		
3-3		회화	나의추억속에서 -20623	승인		
3-4		회화	소리-자연으로부터	승인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신청인
4	구로구 구로동 1253, 1253-1	조각	자연의 울림	승인		경남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신상욱
5-1	관악구 신림동	조각	시간여행	승인		관악구 신림동 678-20 윤상권
5-2	670번지 일대	조각	선물	승인		
6	은평구 응암동 113-35외 2필지	조각	sound space	승인		은평구 응암4동 585-18 이서빌딩 3층 (주)뉴월드종합건설 강창수
7-1	마포구 아현동	조각	또다른얼굴	승인		마포로제3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조합장 김재남
7-2	425-4호 외 55필지	조각	생명+에너지	승인		
8	중랑구 면목동 580-48외 1필지	조각	나비의꿈	승인		중랑구 면목7동 578-21 면목동 용마연립 재건축조합장 손영호
9-1	마포구 도화동 16-5,6,22	조각	날고싶은사람	승인		강남구 대치동 944-31 (주)대한토지신탁 김재희
9-2		조각	행진	승인		
10-1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외 15필지	조각	상생	승인		강남구 도곡동 420-15 덕운빌딩 301호 (주)오리엔트개발 조봉제
10-2		조각	관통	승인		
10-3		조각	분출	재심	진부하고 구태의연함, 조 형성 부족, 작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음	
11	강서구 화곡동 981-1외 2필지	조각	나무이야기	승인		마포구 신수동 47-17 (주)미디어건설 차성근, 함정훈
12-1	광진구 자양동 222-7번지 일대	조각	cut(단)	승인		광진구 화양동1번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12-2		조각	꽃과나비	승인		
12-3		조각	the space	승인		
12-4		조각	평화	승인		
12-5		조각	영혼의나무	승인		
12-6		조각	wild animal	승인		
13	은평구 불광동 189-37외 15필지	조각	공간과공간	승인		은평구 불광2동 155-18 정원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이기홍
14	양천구 신정동 200-1번지 일대	조각	꽃으로핀 행복	재심	조형성 부족	송파구 방이동 108-11 다은빌딩 2층 202호 세양제1지역주택조합장 소양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4-7 진명빌딩 4층 (주)세양건설산업 허영부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신청인
15	서대문구 북가좌동 68-8번지 외 76필지	조각	THE CIRCLE	승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68-8 정원지역주택조합 김기용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126번지 ㈜포레빌 권정환
16	서대문구 홍제동 267-67번지 외 18필지	조각	원형질	승인		서대문구 홍제동 2657-67 공보처 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대표 유정영 강남구 삼성동 78-1 ㈜비콘건설 손종기
17	서대문구 홍제4동 21-20번지 외 32필지	조각	休	승인		송파구 송파동 88번지 4층 (주)지에프엠 신정교
18	송파구 풍납동 410번지 외 15필지	조각	백제의 숨결	재심	조형성 부족, 내용이 진부함, 질감과 색깔이 아파트와 부조화.	송파구 풍납2동 398-13 칼리하우스 102동 302호 동산 대진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규형
19	성동구 금호동4가 1329-9외 43필지	조각	꿈의비상	승인		성동구 금호동4가 1329-9 동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인철 강남구 신사동 519-13 쌍용빌딩 3층 금호이수지역주택조합장 이병만, 금호4가지역주택조합장 김연홍
20	성북구 길음1동 575번지 일대	조각	우제류를 위하여	승인		성북구 길음동 529-2 이화빌딩 2층 1호 길음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 이창화
21	강남구 역삼동 755-1번지 외 4필지	조각	꼬물꼬물 산책	승인		강남구 대치동 921번지 오성빌딩 301호 정건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사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대표성명)	주소		
111516	(주)한강정보통신 (권민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7-1 계림빌딩 306호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기준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않음(기술자 부족)	등록취소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 66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3. 행정처분 일자 : 2006. 5. 1.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0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3224	용국정보통신 (이 용 규)	서울 송파구 오금동 129-12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5.1-5.30)
113149	한국아이디정보(주) (남 승 배)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아이티타워1117호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5.1-5.30)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시행령 제16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6. 5. 1.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대표성명)	주 소		
112807	(주)하레스인포텍 (박 경 양)	서울 중구 필동2가 16-6 풍산빌딩 3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2006.5.4-8.3)
112816	아라리온(주) (정 자 춘)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IT 3동관 16층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월 (2006.5.4-8.3)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
 항, 제66조제2호의3
 3. 행정처분 일자 : 2006. 5. 2.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를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4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783	(재)천주교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413호	김윤희	2006.4. 6	•국내 외 각종 지원사업 •생명운동, 장기기증 운동 등
784	한국통일 문화진흥회	성동구 도산동 14번지 신한넥스텔 513호	김점태	2006.4.13	•초,중,고교 학생 전방시찰 및 견학 후 이념교육 •통일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합동포럼
785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성북구 하월곡동 139번지	박순진	2006.4.14	•실업·빈곤계층 주민들과의 깊은 연대와 깨어있 는 자들과의 우정을 통하여 더불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
786	문화복지연대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김종엽	2006.4.24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 악회 개최 •전국투어콘서트 기획 및 개최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민협력과(☎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구분	변경사항		변경등록일자
			당초	변경	
53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협의회	대표자	배정웅	홍기서	2006.4. 4
192	백두산문인협회	소재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69-15 덕제빌딩 502호	서울시 종로구 승인2동 1401 스타일빌딩 405호	2006.4.25
491	불교환경연대	소재지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402호	종로구 견지동 39-1 조계사신도회관 402호	2006.4.13
594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소재지	금천구 시흥동 1009	종로구 인의동 101-1	2006.4.17
598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대표자	송성자	송성자, 정문자, 이영분	2006.4.25
615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단체명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 본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4.1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민협력과(☎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사항이 말소되었기에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말소일	주 된 사 업
738	(사)대한민국민족혼 국토지킴이회	송파구 문정1동 61-13 4층	박효중	2006.4.4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및 홍보, 교육장학 사업, 사회봉사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민협력과(☎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5호
박물관 신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구 분	등록번호	종류 및 유형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제25호	제1종 전문박물관	한수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2006.4.2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다음의 건설
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
정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말소등을 위한 청

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
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
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자 등록말소등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2. 당사자	(주)초우종합건설	안영석	010176	영등포구 당산동2가 10번지	
	(주)에쉐르종합건설	최명국	011560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8-1	
	오크종합건설(주)	이등	011660	관악구 남현동 1059-10(동남빌딩 2층)	
	명민종합건설(주)	김명석	011722	송파구 가락본동 16-11(명민빌딩 4층 401호)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자 등록말소등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제6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행정과	담당자	정현기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번지			전화번호	3707-9646/7
	일 시	2006년 6월 3일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사무실(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성 명		장태중, 이동욱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견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20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직권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처 분 대 상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처분내용 (처분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제589호	(주)신일정우 글로벌	박희광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0-1 3층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래) 계약 해지 및 재계약 미이행	방문판매법 제25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등록취소 (2006.4.27)
제259호	니켈코리아 (주)	신순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 삼안빌딩 2층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래) 계약 해지 후 재계약 미이행	방문판매법 제25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등록취소 (2006.5.2)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
 경제과(☎ 3707-934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23호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반환청구
안내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서울시에 귀속도록 되어있어 당사자에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 등 송달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보관 현황 : 따로붙임
2. 보관금 반환 청구 기한 : 2006. 5. 26
3. 보관금 반환 청구 안내
지방재정법 제82조, 정부보관에관한법률 제1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미청구된 보관금은 서울시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재무과(02-731-6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관현황

(단위 : 원)

연번	보관일	납부자	납부액	지출액	반환액	보관이유
1	1997/06/20	마포구청장	3,384,260	3,356,650	27,6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	1997/07/30	한국지역난방공사장	3,199,300	2,819,027	380,273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	1997/10/08	삼성화재해상보험	1,202,880	1,091,000	111,8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	1997/10/08	서남열	936,000	891,969	44,03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	1997/10/09	김포군수	4,452,900	4,234,101	218,799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	1997/10/11	시흥2-1구역재개발조합장	181,470,580	181,462,690	7,8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	1997/10/13	강남구청장	126,195,840	98,252,330	27,943,5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	1997/10/23	강동구청장	11,779,170	9,158,530	2,620,6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	1997/10/28	영등포구청장	29,897,010	29,879,010	1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	1997/12/10	강동구청장	35,162,990	35,140,350	22,6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	1997/12/12	국제화재	1,056,000	770,000	28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부액	지출액	반 환 액	보관이유
12	1998/01/06	택시공제조합	1,122,000	-	1,12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	1998/06/29	동작구청장	7,854,220	6,797,230	1,056,9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	1998/08/10	동부화재	568,790	291,000	277,7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	1998/08/27	김완	1,158,000	1,065,000	9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	1998/11/23	성북구청장	7,546,550	6,436,100	1,110,4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	1998/11/27	종로구청장	6,470,560	6,470,530	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	1998/12/01	삼성화재	1,023,000	726,000	297,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	1998/12/03	양천구청장	7,868,960	7,578,670	290,2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	1998/12/09	관악구청장	5,874,000	5,676,000	19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	1998/12/15	두산건설(주)	3,344,000	3,014,000	3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	1998/12/26	중구청장	8,654,390	8,620,430	33,9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3	1998/12/26	중구청장	11,559,940	11,523,220	36,7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4	1998/12/29	성북구청장	8,094,790	7,466,690	628,1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5	1998/12/30	구로구청장	7,152,310	4,486,570	2,665,7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6	1998/12/30	광진구청장	14,399,220	10,131,000	4,268,2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7	1998/12/31	용산구청장	10,581,980	10,066,660	515,3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8	1998/12/31	도봉구청장	32,648,000	30,910,000	1,73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9	1998/12/31	경기도지사	3,321,560	-	3,321,5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부액	지출액	반 환 액	보관이유
30	1999/01/21	동양화재	541,950	-	541,9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1	1999/04/09	도봉구청장	990,000	836,000	15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2	1999/04/09	삼성화재	1,100,000	-	1,10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3	1999/04/27	남가좌제6구역재개발조합	2,642,350	2,642,310	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4	1999/05/12	삼성화재해상보험	1,089,000	-	1,08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5	1999/05/11	마포구청장	1,815,000	1,584,000	23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6	1999/05/17	벽산건설	1,502,050	1,372,140	129,9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7	1999/05/18	(주)동아건설	4,136,000	4,114,000	2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8	1999/05/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128,000	-	7,12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39	1999/05/20	철도건설본부장	6,104,890	5,072,540	1,032,3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0	1999/05/27	성북구청장	2,530,000	-	2,5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1	1999/05/29	종로구청장	10,709,710	10,709,160	5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2	1999/06/08	이중식	298,000	240,000	5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3	1999/06/14	도봉구청장	5,126,000	4,158,000	96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4	1999/06/14	돈암3-2지구재개발조합장	15,697,420	15,098,080	599,3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5	1999/06/21	삼성화재보험	1,455,000	1,399,000	5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6	1999/06/22	동부화재	693,000	671,000	2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7	1999/06/30	화물공제조합장	1,924,970	1,886,350	38,6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 부 액	지 출 액	반 환 액	보관이유
48	1999/07/09	관악구청장	7,787,230	3,974,190	3,813,0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49	1999/07/13	한국전력공사	3,700,600	3,217,100	483,5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0	1999/07/16	금천구청장	1,626,750	1,589,280	37,4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1	1999/07/20	동대문구청장	8,311,210	6,415,990	1,895,2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2	1999/08/12	창동연합주택조합장	17,446,000	16,984,000	46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3	1999/08/19	금천구청장	559,570	-	559,5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4	1999/08/19	강북구청장	418,460	-	418,4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5	1999/08/19	중랑구청장	1,027,880	-	1,027,8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6	1999/08/19	중구청장	555,340	-	555,3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7	1999/08/19	중구청장	297,820	-	297,8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8	1999/08/19	구로구청장	449,930	-	449,9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59	1999/08/19	삼성화재해상보험	473,000	-	47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0	1999/08/30	화물공제조합	528,000	-	52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1	1999/09/03	강동구청장	45,389,680	40,189,430	5,200,2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2	1999/09/09	김의주	726,000	-	72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3	1999/10/04	종로구청장	3,709,710	3,524,330	185,3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4	1999/10/05	동부화재해상보험	759,000	738,966	20,034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5	1999/10/11	동부화재해상보험	787,000	-	787,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부액	지출액	반 환 액	보관이유
66	1999/10/19	국제화재해상보험	1,171,000	-	1,17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7	1999/10/21	정릉무궁화재건축아파트조합장	5,676,000	3,509,000	2,167,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8	1999/10/28	도봉구청장	2,222,000	2,134,000	8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69	1999/11/02	동부화재해상	748,000	-	74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0	1999/11/02	용산구청장	43,803,130	43,797,080	6,0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1	1999/11/05	광진구청장	25,103,500	25,087,340	16,1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2	1999/11/08	윤용한	726,000	-	72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3	1999/11/09	관악구청장	20,074,670	16,853,210	3,221,4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4	1999/11/09	대한화재	2,923,000	-	2,92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5	1999/11/19	대림산업(주)	4,488,000	-	4,48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6	1999/11/22	한보	21,884,430	21,587,870	296,5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7	1999/11/22	성북구청장	52,933,090	52,932,670	4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8	1999/11/27	대동주택	1,694,000	1,628,000	6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79	1999/12/09	정도건설	6,435,990	4,981,570	1,454,4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0	1999/12/10	강동구청장	1,397,000	1,342,000	55,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1	1999/12/10	한국무역협회장	11,815,100	11,458,370	356,7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2	1999/12/10	우성건설	18,030,670	17,986,890	43,7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3	1999/12/11	강동구청장	16,800,400	16,689,250	111,1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 부 액	지 출 액	반 환 액	보관이유
84	1999/12/14	성동구청장	4,323,290	4,284,910	38,3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5	1999/12/15	구로구청장	21,692,000	20,691,000	1,00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6	1999/12/15	구로구청장	12,421,820	3,366,000	9,055,8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7	1999/12/15	강동구청장	23,154,200	5,227,530	17,926,6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8	1999/12/16	성북구청장	13,103,290	7,574,960	5,528,3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89	1999/12/17	용산구청장	13,204,360	13,168,860	35,5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0	1999/12/20	강북구청장	5,325,630	5,294,120	31,5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1	1999/12/21	중구청장	7,548,170	7,519,800	28,3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2	1999/12/22	금천구청장	2,170,260	2,157,420	12,8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3	1999/12/23	LG화재해상	1,826,000	-	1,82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4	1999/12/27	강서구청장	10,013,780	9,975,300	38,4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5	1999/12/27	강서구청장	16,129,000	16,071,540	57,4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6	1999/12/28	동부건설(주)	69,567,130	69,313,580	253,5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7	1999/12/28	광진구청장	91,534,870	91,036,160	498,7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8	1999/12/29	서초구청장	18,567,490	18,486,650	80,8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99	1999/12/29	쌍용화재	814,000	-	81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0	1999/12/29	중구청장	24,080,010	24,023,400	56,6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1	1999/12/29	동대문구청장	1,168,630	1,161,720	6,9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 부 액	지 출 액	반 환 액	보관이유
102	1999/12/29	중랑구청장	8,513,330	8,483,960	29,3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3	1999/12/29	동작구청장	13,293,100	13,244,730	48,3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4	1999/12/30	관악구청장	6,126,110	5,964,560	161,5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5	1999/12/30	강서구청장	8,996,570	8,970,900	25,6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6	1999/12/30	강북구청장	6,829,700	6,673,090	156,6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7	2000/01/06	강미란	1,114,000	-	1,11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8	2000/01/19	대우건설	1,969,000	1,881,000	8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09	2000/01/19	삼성화재해상보험	2,118,910	2,106,370	12,5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0	2000/01/25	강북구청장	5,771,560	5,737,410	34,1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1	2000/02/29	현대산업개발	28,842,000	28,281,000	56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2	2000/03/14	현대산업개발	1,848,260	-	1,848,2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3	2000/03/20	그린건축사무소	1,219,130	-	1,219,1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4	2000/03/28	김경순	902,000	-	90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5	2000/04/04	우성건설	2,172,830	-	2,172,8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6	2000/04/11	동성교통	792,000	-	79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7	2000/04/12	화물공제조합	450,000	-	45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8	2000/04/14	김기관	660,000	-	66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19	2000/04/14	삼성화재해상	825,000	-	825,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 부 액	지 출 액	반 환 액	보관이유
120	2000/04/17	현대해상	759,000	-	75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1	2000/04/17	신세계백화점	9,790,000	8,877,000	91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2	2000/05/02	김재일	429,000	-	42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3	2000/05/03	동아건설산업(주)	2,067,560	2,018,610	48,9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4	2000/05/09	전국화물공제조합	105,000	-	105,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5	2000/05/12	센트럴시티	13,456,000	13,448,250	7,7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6	2000/05/19	이상언	968,000	-	96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7	2000/05/23	화물공제조합	847,000	-	847,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8	2000/05/26	(주)대우	1,949,750	1,897,280	52,4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29	2000/05/29	차성준	3,453,000	-	3,45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0	2000/05/30	현대해상보험	9,216,800	-	9,216,8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1	2000/06/01	동부화재	836,000	-	83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2	2000/06/13	대우	20,658,000	20,328,000	3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3	2000/06/16	신공덕재개발조합	1,755,710	1,627,230	128,4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4	2000/06/16	신공덕재개발아파트	25,157,000	23,408,000	1,74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5	2000/06/16	정경락	1,001,000	-	1,00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6	2000/06/20	곽한민	792,000	-	79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7	2000/06/21	대우한강아파트재건축현장	3,197,480	3,179,440	18,0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 부 액	지 출 액	반 환 액	보관이유
138	2000/06/21	대한화재보험	330,000	-	3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39	2000/06/23	동양화재	73,000	-	7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0	2000/06/23	동부화재	385,000	-	385,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1	2000/06/28	LG건설	24,563,000	24,557,610	5,3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2	2000/06/28	삼성화재해상보험	326,400	-	326,4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3	2000/07/05	정경운	385,000	-	385,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4	2000/07/06	대한화재보험	726,000	-	72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5	2000/07/07	현대해상	360,000	-	36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6	2000/07/08	삼성아파트	6,391,000	6,237,000	15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7	2000/07/10	마포구청장	23,639,000	-	23,63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8	2000/07/11	동양화재	513,000	-	51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49	2000/07/12	개인택시조합	484,000	-	48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0	2000/07/13	삼성화재	803,000	-	80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1	2000/07/15	현대해상	671,000	-	67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2	2000/08/03	이재오	330,000	-	3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3	2000/08/04	삼성화재보험	440,000	-	44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4	2000/08/10	동부화재보험	847,000	-	847,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5	2000/08/18	용화개발	330,000	-	3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 부 액	지 출 액	반 환 액	보관이유
156	2000/08/21	국제화재	638,000	-	63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7	2000/08/22	권오걸	136,900	-	136,9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8	2000/08/24	현대해상	157,200	-	157,2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59	2000/09/02	쌍용화재	1,481,400	-	1,481,4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0	2000/09/06	택시공제조합	539,000	-	53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1	2000/09/07	이십로	344,400	-	344,4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2	2000/09/14	삼성화재	1,111,000	-	1,11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3	2000/09/14	이상운	792,000	-	79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4	2000/09/18	성북구청장	16,305,170	13,074,250	3,230,9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5	2000/09/18	성북구청장	1,215,700	-	1,215,7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6	2000/09/22	삼성화재보험	2,563,000	-	2,563,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7	2000/09/22	쌍용화재	671,000	-	67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8	2000/09/27	노원구청장	10,318,000	9,872,830	445,1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69	2000/09/27	대우건설	2,768,180	2,721,390	46,7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0	2000/09/29	대한화재보험	245,600	-	245,6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1	2000/10/04	현대해상보험	1,166,000	-	1,16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2	2000/10/06	김효일	176,000	-	17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3	2000/10/09	김용덕	1,623,900	-	1,623,9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 부 액	지 출 액	반 환 액	보관이유
174	2000/10/10	이근수	781,000	-	78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5	2000/10/25	용산구청장	4,949,120	-	4,949,1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6	2000/11/17	동부건설	10,870,000	10,780,000	9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7	2000/11/21	부영	2,599,670	2,558,060	41,61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8	2000/11/27	창동대우주택조합장	1,617,000	1,573,000	4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79	2000/11/28	주광연	308,000	-	30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0	2000/11/30	김병열	968,000	967,060	9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1	2000/11/30	쌍용화재보험	748,000	-	74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2	2000/12/01	택시공제조합	315,400	-	315,4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3	2000/12/05	최성수	97,000	-	97,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4	2000/12/05	동부화재	781,000	-	78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5	2000/12/06	김성욱	649,000	-	64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6	2000/12/06	중구청장	1,699,060	-	1,699,0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7	2000/12/07	중랑구청장	13,211,000	13,154,900	56,1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8	2000/12/11	종로구청장	1,826,000	-	1,82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89	2000/12/11	종로구청장	6,840,110	5,622,510	1,217,6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0	2000/12/11	대한화재	1,804,000	-	1,80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1	2000/12/12	현대해상보험	210,000	-	21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부액	지출액	반 환 액	보관이유
192	2000/12/12	화물공제조합	957,000	-	957,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3	2000/12/12	삼성화재보험	1,034,000	-	1,03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4	2000/12/20	벽산건설	34,122,000	34,100,000	2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5	2000/12/21	은평구청장	2,530,000	-	2,5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6	2000/12/22	황유식	341,000	-	34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7	2000/12/23	현대건설	790,680	757,800	32,8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8	2000/12/23	경성여객	1,906,000	-	1,90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199	2000/12/26	광진구청장	3,289,000	-	3,28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0	2000/12/27	화물공제조합	239,000	-	23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1	2000/12/27	대신증권	2,805,000	2,783,000	2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2	2000/12/27	구로구청장	1,716,000	-	1,716,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3	2000/12/29	마포구청장	454,370	-	454,3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4	2000/12/29	삼성화재	924,000	-	92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5	2000/12/30	은평구청장	3,850,730	-	3,850,73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6	2000/12/30	화물자동차공제조합	221,600	-	221,6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7	2001/01/08	롯데쇼핑	18,161,000	17,809,000	35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8	2001/01/09	강남구청장	25,918,650	25,532,190	386,4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09	2001/01/09	강남구청장	60,383,970	14,028,080	46,355,8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연번	보 관 일	납 부 자	납부액	지출액	반 환 액	보관이유
210	2001/01/10	금호6구역재개발	6,366,490	6,360,440	6,05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1	2001/01/12	리젠트화재보험	3,630,000	3,624,240	5,7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2	2001/01/12	화물공제조합	638,000	634,130	3,8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3	2001/01/16	리젠트화재보험	291,000	-	29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4	2001/01/18	쌍용화재	880,000	-	88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5	2001/01/20	삼성화재	665,000	-	665,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6	2001/01/20	삼성화재	68,000	-	6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7	2001/01/30	이신주	330,000	-	330,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8	2001/01/30	삼성화재	227,400	-	227,4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19	2001/02/02	삼성화재보험	1,188,000	-	1,188,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0	2001/02/06	국제화재보험	214,000	-	214,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1	2001/02/08	삼성화재보험	913,000	908,230	4,77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2	2001/02/19	강남구청장	2,739,000	-	2,739,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3	2001/02/20	도봉구청장	1,546,250	1,352,560	193,69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4	2001/02/21	영등포구청장	9,478,260	8,367,260	1,111,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5	2001/02/23	삼성화재	462,000	-	462,0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6	2001/02/28	강동구청장	68,905,590	58,913,130	9,992,46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7	2001/02/28	중랑구청장	11,581,680	11,525,700	55,98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228	2001/02/28	서대문구청장	3,267,000	2,884,460	382,5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공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24호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반환청구 안내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

는 이를 서울시에 귀속도록 되어있어 당사자에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 등 송달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보관 현황

(단위 : 원)

연번	보관일	납부자	주소	변환액	보관이유	비고
1	2001.5.24	화물공제조합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번지	30,02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원안자 공사	
2	2001.5.24	이중석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9-60	73,774	"	
3	2001.5.31	LG건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104,750	"	
4	2001.5.11	오메가 트레이딩코리아	서울 강남구 청담동 88-37	725,310	담배소비세 납세 담보세액 충당 납부 잔액	

2. 보관금 반환 청구 기한 : 2006. 5.31
 3. 보관금 반환 청구 안내
 지방재정법 제82조, 정부보관에관한법률 제1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미청구된 보관금은 서울시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재무과(02-731-6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27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업종	등록일자
서울E-3-079	(주)유진씨앤이	이광철	동대문구 청량리동 212	110111-2216186	전문설계업(2종)	2006.5.04
서울S-1-324	(주)하나에치티	양성일	광진구 구의동 212-1	110111-3196949	종합감리업	"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3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안) 열람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66호(2001.8.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7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사업의명칭 : 명일근린공원 조성
- 3) 사업면적 및 규모
 - 면 적 : 6,981㎡
 -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4) 사업시행자(대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
 - 사업대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 강동구청장
 - 5)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2007.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20일간 (열람시간 09:00~18:00)
-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공원과 ☎ 6321-4186) 및 강동구(공원녹지과 ☎ 480-1395)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3필지		27,925	6,981						
1	산47	임야	7,934	5,300	(주)금산코퍼레이션	강동구 성내동 378-2	국 용산세무서	용산구 한강로3가 65-342		근저당권
2	산46	임야	19,510	1,200	(주)금산코퍼레이션	강동구 성내동 378-2	국 용산세무서	용산구 한강로3가 65-342		근저당권
3	152-2	임야	481	481	박상학	강남구 도곡동 141-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건축물)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번호	소재지	건물면적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용도	구조
		계	무허가			성명	주소				
			주택	창고	화장실						
1	산47	39	39			주동국	상일동 산47	주동국	주승규 주승준	주택	판넬/블럭

번호	소재지	건물면적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용도	구조
		계	무허가			성명	주소				
			주택	창고	화장실						
2	산47	75	75			신순애	상일동 산47	신순애	주현정 주경창	주택	판넬/블럭
3	산47	17	17			박유진	상일동 산47	박유진	박현진	주택	판넬/블럭
4	산47	32	29		3	허철민	상일동 산47	허철민	송인경 허다운 허지윤	주택	판넬/블럭
5	산47	36	31	5		송광진	상일동 산47	송광진	김유림	주택	판넬/블럭
6	산47	196	129	59	8	송병기	상일동 산47	송병기	이희순 송진숙	주택	판넬/블럭
7	산47	40	36	4		이종규	상일동 산47	신안섭	이종규	주택	판넬/블럭
8	산47	18	18			한순자	상일동 산47	한순자		주택	판넬/블럭
9	산46	60	60			강영순	상일동 산46	강영순 강영국	강준순 강주석	주택	판넬/블럭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수목 등)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산47	밤나무	H3.0*R12	3	상일동 산47	송병기			
		자두	H1.5*R5	1					
		앵두	H1.5*R3	1					
		두릅	H1.5*R3	40					
		철쭉	H0.4*W0.4	28					
		감나무	H1.5*R3	5					
		밤나무	H1.5*R3	3					
		대추	H1.5*R3	4					
		자두	H1.5*R3	4					
		살구	H1.5*R3	2					
포도	H0.5*R2	2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및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산47	복숭아	H1.5*R3	3	상일동 산47	송병기			
		사과	H1.5*R3	1					
		배나무	H1.5*R3	2					
		홍단풍	H1.5*R3	8					
		능소화	L2.0*R2	5					
		매실	H1.5*R3	2					
		벗나무	H1.5*R3	1					
		사철나무	H1.0*R3	2					
		라일락	H1.5*R2	5					
		땅두릅	5년생	200					
		박태기	H1.5*R2	3					
		개나리	3지	50					
		절래	H1.5*R2	1					
수국	H1.5*R2	1							
2	산47	주목	H1.5*R3	3	상일동 산47	신순애			
		대추	H1.5*R3	1					
		모과	H1.5*R3	1					
		은행	H2.5*R10	1					
		감나무	H1.5*R3	1					
		살구	H1.5*R3	1					
3	산47	차두	H1.5*R3	3	상일동산47	이근욱			
		매실	H1.5*R3	1					
		감나무	H1.5*R3	3					
4	산47	관정		1	상일동 산47	송병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7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
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 사

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 특별 시장

1. 허가번호 : 제2006-10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뉴라이트재단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214호
- 4. 대표자 : 안병직
- 5. 허가년월일 : 2006. 5. 3
- 6. 설립목적 :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21세기의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9호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1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지정번호(지정일자)	상호(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업무범위
운행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제서대문2-1호 (2006.5.8)	북이현점 현대자동차 (☎ 02-365-8204)	이봉만	서울시 서대문구 북이현3동 187-4	휘발유·LPG분야
운행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제서대문2-2호 (2006.5.8)	연희점 현대자동차 (☎ 02-337-8367)	이봉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2-25	휘발유·LPG분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대기과(☎ 02-3707-9536)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4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등록번호	성명(명칭)	소재지		
110855	(주)주성텔레콤 대표 이주태	서울 성북구 석관동 126-7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1월
110557	(주)조인트테크노과이정보통신 대표 김중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3 천일 B/D 5층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1월
110675	(주)케이씨에스 대표 이준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8-13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1월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3. 의견서 제출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 : 정보통신 담당관, 담당자 : 정남영 전자우편 cn007

@seoul.go.kr)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 별관3동(☎ 02-6360-4992, FAX 02-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6. 5. 24(수)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2-6360-4992, 정남영)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 제2006-4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호(2006.2.2)
로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
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
은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

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 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 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동대문구 제기동 132-1호일대	-	증) 1,537	1,537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4.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2127-4583) 및 기획재정국 지적과(☎ 2127-44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5월 11일
동 대 문 구 청 장

◆ 동대문구고시 제2006-43호

도시계획시설(제기2동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37(2006.2.2)호 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동 132-1호 일대 제기2동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원 녹지과(2127-4776)에 비치하여 토지, 건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제기2동 어린이 공원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2-1호 일대
- 다. 면 적 : 1,537m²
- 라. 도시계획시설(제기2동어린이공원) 조성 계획결정 조서 : 별첨
- 마. 도시계획시설(제기2동어린이공원) 조성 계획결정 도면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제기2동 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결정)

가. 총괄표(위치 : 동대문구 제기동 132-1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동)	시설면적(㎡)	시설면적(㎡)		
계	1,537.0	750.5				41	시설율 48.8%
기 반 시 설	소 계	518.2	518.2				
	도 로	247.3	247.3				
	광 장	270.9	270.9				
휴양시설	(59.4)	(59.4)				14	
유희시설	165.4	165.4				3	
운동시설	66.9	66.9				6	
관리시설	-	-				18	
녹지·기타	786.5	-				-	

나.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537.0	750.5					41	
기 반 시 설	소 계			518.2	518.2						
	도 로		전지역	247.3	247.3						
	광 장	가1	남측출입구	201.1	201.1						
		가2	북측출입구	69.8	69.8						
휴 양 시 설	소 계			(59.4)	(59.4)					14	
	파고라	①	광장내	(48.0)	(48.0)	목재				2	
	평의자	②	전지역	(7.0)	(7.0)	목재				10	
	연식의자	③	광장내	(4.4)	(4.4)	목재				2	
유희 시 설	소 계			165.4	165.4					3	
	놀이터	나	공원중앙	165.4	165.4						
	조합놀이대	④	놀이터	(21.6)	(21.6)	목재/스텐				1	
	그 네	⑤	놀이터	(7.7)	(7.7)	스텐				1	
	회전무대	⑥	놀이터	(4.5)	(4.5)	스텐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66.9	66.9					6	
	운동공간	다	공원중앙	66.9	66.9						
	허리돌리기	⑦	운동공간	(0.7)	(0.7)	스텐				1	
	윗몸일으키기	⑧	운동공간	(2.5)	(2.5)	목재				1	
	크로스컨트리	⑨	운동공간	(2.3)	(2.3)	스텐				1	
	위밍암	⑩	운동공간	(1.2)	(1.2)	스텐				1	
	롤링웨이트	⑪	운동공간	(1.2)	(1.2)	스텐				1	
체어웨이트	⑫	운동공간	(1.2)	(1.2)	스텐				1		
관리시설	소 계									18	
	블라드	⑬	출입구				화강석			10	
	수목보호홀	⑭	광장내				주철			8	
녹지 및 기타				786.5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02.4	247.3	산책로 진입로			
신설	소계				102.4	247.3				
	산책로	3	1	4.3	12.6	54.2	진입로	남측진입부	광장	
		3	2	3.3	7.3	24.1	진입로	북측진입부	광장	
		3	3	3.3	16.8	55.4	진입로	남측광장	북측광장	
		3	4	2.3	9.2	21.2	진입로	서측진입부	산책로6	
		3	5	1.8	4.8	8.6	진입로	남측진입부	광장	
		3	6	1.8	28.6	51.5	진입로	남측광장	북측광장	
		3	7	1.4	23.1	32.3	진입로	남측광장	북측광장	

◆ 도봉구고시 제2006-1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도봉구고시 제98-78호(1998.10.2)로 결정되고, 도봉구고시 제2005-75호(2000.12.5)로 변경 결정된 도봉구 창동 224-41번

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도 봉 구 청 장
 가. 결정(변경)취지 :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
 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동사무소	창동 224-41번지 일대	1,804.08	증)8.92	1,813	'98.10.02 (도고78)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다. 관계도서 : 단순면적 정정으로 지형도면
 의 변경사항이 없어 관계도면 생략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본 결정고시로 갈음합니다.
 마.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2289
 -1805), 지적과(☎ 2289-1405)에 관
 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산8-7 번지일대에 대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
 행령제97조에 의거 아래와같이 도시계
 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고
 시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 5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일대

나. 사업기간 : 2006. 3. ~ 2010. 12. 31.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사업

라. 사업규모 : 950,643m²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 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별 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
 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
 에 의함.

◆ 노원구고시 제2006-14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005.1.31)
 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노원구 고시 제2005-16(2005.3.4)
 호로 지형도면 승인고시및 서울특별시노
 원구공고제2006-149(2006.3.24)호로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된 서울시 노원구

자. 사업개요

사업 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사업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고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사업	○ 부지면적 : 950,643m ² ○ 시설종류 : 휴양시설 등 74개시설	2006. 4. - 2010.12.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자와면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임	3,305	3,305	정동일 외 2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53	김은영 외 4인	광진구 구의동 80-393	근저당권	가압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임	10,909	10,909	김창성 외 3인	성북구 종암동 8-177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임	4,463	4,463	최마이클운	인천 남구 송의동 42-1				가등기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임	55,537	55,537	조재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가압류
노원구 월계동 산68번지	임	31,491	90	조재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가압류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임	237,139	445	김상균	용산구 이촌동 430				
노원구 월계동 산17-1번지	임	2,822	2,822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노원구 월계동 916번지	전	201	201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노원구 월계동 916-4번지	전	202	202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노원구 월계동 915-1번지	전	213	213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노원구 월계동 915-9번지	전	96	96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노원구 월계동 916-3번지	전	43	43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노원구 월계동 916-5번지	전	16	16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노원구 월계동 915-8번지	전	81	81	이이철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1-1	최경애	도봉구 창동 299 상아A 2-916	근저당권	
노원구 월계동 915-7번지	전	94	94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노원구 월계동 915-6번지	전	96	96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노원구 월계동 산3-1번지	임	8,835	8,835	태양극	강남구 역삼동 712-3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관리의 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원구 월계동 749번지	전	2,508	2,508	이정숙 외1인	강남구 역삼동 712-3				가등기
노원구 월계동 750번지	대지	595	595	태성원	강남구 도곡동 527				

물 건 조 서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배드민턴장	천막/파이프	2면	배드민턴장 (신창)	주민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수목	-	85주	아카시아 등	정동일 외 2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53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묘	-	12개	묘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묘 상석	돌	4개	묘 상석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배드민턴장	천막/파이프	4면	배드민턴장 (초현)	주민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등의자	목재	7개	등의자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매달리기	목재	1개	매달리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윗몸 일으키기	목재	2개	윗몸 일으키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3개	허리돌리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오금펴기	목재	1개	오금펴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약수터	콘크리트	10㎡	폐쇄된 약수터	주민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수목	-	132주	아카시아 등	김창성 외 3인	성북구 종암동 8-177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망부석	돌	1개	망부석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묘 상석	돌	4개	묘 상석					
노원구 월계동 산8-2번지	묘	-	7개	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배드민턴장	천막/파이프	4면	배드민턴장 (신창)	주민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2개	허리돌리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철봉	철주	1개	철봉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평행봉	철주	1개	평행봉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의자	목재	3개	의자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가림막	천막/파이프	20m ²	가림막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묘	-	7개	묘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망부석	돌	3개	망부석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석상	돌	2개	석상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묘 상석	돌	4개	묘 상석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철조망	-	108M	철조망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윗몸 일으키기	목재	3개	윗몸 일으키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매달리기	목재	1개	매달리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1개	허리돌리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오금펴기	목재	1개	오금펴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약수터	콘크리트	1개	달샘약수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배드민턴장	-	2면	배드민턴장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정자	목재	1개	정자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배수로	석축	2X63m	석축배수로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화장실	판넬	2동	발효식 화장실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파고라	목재	3동	파고라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철봉	철재	2개	철봉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평행봉	철주	1개	평행봉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등의자	목재	20개	등의자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약수터	콘크리트	1m ²	폐쇄된 약수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팔굽혀펴기	철재	2개	팔굽혀펴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묘	-	3개	묘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수목	-	16,100주	참나무 등	조재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노원구 월계동 산68번지	정자	목재	1개	정자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윗몸 일으키기	목재	1개	윗몸 일으키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철봉	목재	1개	철봉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1개	허리돌리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의자	목재	9개	평의자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정자	목재	1개	정자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평행봉	철재	2개	평행봉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역기	철재	1개	역기	노원구청				보상대상아님

◆ 은평구고시 제2006-25호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06호(2003.5.15)로 결정된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 및 같은법률시행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실효)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조서

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02-350-382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5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실효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번동 5-29번지 일원	109,463	감)109,463	0	실효일자 2006.5.16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m ²)	변경(실효) 사유
실효	①	녹번동 5-29번지 일원	109,463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 고시) 기간 경과

나. 관련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서대문구고시 제2006-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6호(1974.8.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6-206호(2006.4.13)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우리구 홍제동(대로 1-7)~홍

제3동 300-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5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	비 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홍제동(대로 1-7)~홍제3동 300-8간 도로개설사업	홍제3동 299-25	53m ²	고시일로부터 2006.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106호 (1974. 8. 1)호	매수청구 토지보상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
세 : [따로붙임 조서 참조]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조서 참조]
마.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서대문구청 토목하수과(공사 : ☎ 330
-1760~5) 및 건설관리과(보상 : ☎ 330
-1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제동(대로 1-7)~홍제3동 300-8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m ²)	수용면적 (m ²)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1	홍제3동 299-25	대	53	53	한규범	서대문구 홍제동 321-1 현대빌라 401호	서대문구 (세무2과)		압류	매수청구 토지
							서대문세무서	홍제3동 251	압류	
							서대문구 (건설관리과)		압류	

◆ 서대문구고시 제2006-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
4항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6년 5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홍제동 인왕산휴플러스 신
축공사

-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주) 상우건설
대표자 : 백예흠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45-9외 74필지
- 사업시행면적 : 6,529m²
- 건설주택의 규모 : 아파트 1개동 115세
대 및 근생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지하9층 지상15층)
연면적 : 51,453.26m², 건폐율 : 49.96%,
용적률 : 249.99%
- 사업시행기간 : 2006.07(착공예정) ~
2008. 11.(사용검사예정)

7.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 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한 건축선지정.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중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설치신고

8. 도시계획설치계획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증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27m	-	-	일반도로	-	기부채납(222.00㎡)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2-a	• 진입도로 부분확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정비

(1)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미 정	소공원	홍제동 146-26번지 일대	-	증)431.0	431.0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미 정	-소공원신설 A: 431.0㎡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9. 주택건설 사업승인내역

건설위치	서울시 홍제동 145-9외 74필지					
사업주체명	(주) 상우건영 대표자: 백예흠		시 공 자	한신공영(주) 대표자: 최용선		
규	주택종류	아파트 및 기타				
	층 수	지하9층/지상15층		동 수	1개동	
모	아파트	평 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세대수
		33A	84.78	25.86	110.64	50
		33B	84.78	25.88	110.66	12

구	주택종류	지하9층/지상15층		동 수	1개동	
	층 수	평 형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계(m ²)	세대수
모	아파트	39A	108.28	23.53	131.81	10
		39B	108.28	23.53	131.81	10
		46A	122.24	30.33	152.57	23
		46B	122.24	30.33	152.57	10
	기 타	근생시설 : 10,053.27m ² , 문화집회시설 : 4,220.43m ² , 판매시설 : 3,131.94m ² 등				
공급면적	아파트 115세대		조합원공급 : -		임의공급 : 115세대	
사업개요	대지면적 : 5,876.00m ²		건축면적 : 2,935.65m ²		연면적 : 51,453.26m ²	
	건폐율	49.96%	용 적 률	249.99%	용 도	공동주택
	소공원신설	431m ²	도로폐지	-	도로증설	222m ²
사업비(천원)	122,952,000천원					
사업기간	2006. 07.~2008. 11.					
부대복리시설	구 분	설치개소		면 적(m ²)		
	주차대수	474대		17,861.25		
	관리사무소	1		45.79		
	가스공급	개별난방		/		
	어린이놀이터	1		389.4		
	노인 정	1		81.99		
	조 경	/		1,261.74		
<p>※ 기타, 관계도서는 우리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구로구고시 제2006-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p> <p>1. 서울특별시고시제5호('88.1.2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2004-10호(2004.2.16)로 최종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p>						
<p>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된 우리구 공동 35번지 일대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006년 5월 11일 구 로 구 청 장</p>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건축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기정	-	학교	고등 학교	궁동 35번지 일대	18,758	20% 이하	81.59% 이하	현지방고에서 25.1m이하	'88. 01.26	학교선형변경없이 구적오차 (증9㎡)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	"	"	18,767	"	"	"		

나.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서초구고시 제2006-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39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

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같은 법률 동조제4항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건축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신설	사회복지시설	방배동 455-11	961.4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 관계도면 : 생략(서초구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

3.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570-6385~7) 및 방배2동(☎ 585-696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주택재건축사업)내역

가. 사업명 : 청담한양아파트재건축사업

나. 사업주체 : 청담한양아파트재건축조합

다. 시 공 자 : 지에스건설(주)

2.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사업위치 : 강남구 청담동 134-9,

134-10, 134-11, 134-12, 134-26

나. 사업규모

구 분	주 택 용 지
대 지 면 적	24,392.85㎡
동수 및 층수	5개동, 26~35층/지하2층
세 대 수	708세대(임대36세대 포함)
연 면 적	102,391.914㎡(임대포함)

◆ 강남구고시 제2006-21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9번지 외4필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3. 사업 시행 기간 : 2006. 8.~2009. 8.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
 5.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 보관

◆ 강남구고시 제2006-22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9호(2005.12.)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06년 5월 11일
 강남구청장

1. 명칭, 위치 및 면적
 -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나. 위 치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중 청담지구
2. 주요 변경내용
 - 가. 청담지구 도로모퉁이변의 가각을 조정하기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미한 변경
 - 나. 청담지구 도로의 변경에 의해 감소된 공원면적을 보존하기위한 공원의 일부 위치변경

3. 세부 변경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부분에 한함)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①~	기정	소로	1		6	집산도로	611	청담동	청담동	일반도로			
②	변경	소로	1		6	집산도로	611	134-8	139-30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②	소로1-	소로1-	진입부 도로가각정비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의 진입부 회전반경확보

-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부분에 한함)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③	청수	근린공원	청담동 134-13공 일원	17,402.0	-	17,402.0	면적변경없음 (일부위치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청수근린공원	면적변경없음 일부위치변경	•기도로의 변경에 의해 감소된 공원면적을 보존하기위한 공원의 일부위치변경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비치도서와 같음)
5.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2104-185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06-215호

가회정비구역 공사완료 공람(정정)

1. 건설부고시 제1995-209호('95.6.22)로 지구 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6-14호(2006.4.6)로 지정변경되고 2006-141(2006.4.6)로 환지계획 변경된 가회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2항 및 도

시개발법제39조1항 같은법시행령제54조 3항에 따라 공사완료 내용을 일반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

2006년 5월 11일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명칭 : 가회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시행자 : 종로구청

다.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개발계획에 의한 공중별 공사 시행 내역(정정)

(1) 도시계획시설 설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관련)

구 분	명 칭				기 능	사용형태	연 장(m) (지구경계내)	비 고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 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4	가회동1-53	가회동1-99	
기 정	소로	3	2	6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446 (135)	가회동1-220	가회동1-65	당초
변 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446 (135)	가회동1-220	가회동1-65	정정
기 정	소로	3	3	2~3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39	가회동1-181	가회동1-39	

※ 기타 다른 사항 정정사항 없음

◆ 성동구공고 제2006-281호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4(2004.7.15)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구역지정 되고, 2005.1.8일 조합설립인가 되어 성동구고시 제2005-60(2005.9.15)호 및 성동구고시 제2006-8(2006.3.8)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된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당

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3.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11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6년 5월 8일~2006년 6월 7일(30일간)

-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주택과
(전화 : 2286-5590~6)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전화 : 2298-2854)
- 다. 의견서제출 : 우133-701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성동구청 주택과
- 라. 사업내용
 - (1) 사업명칭 :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 시행구역 : 성동구 금호동 235번지 일대
 - (3) 시행면적 : 33,291.00㎡
 -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1개월
 - (5) 시행자 : 금호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조합장 이민주
 - (6) 사업계획 : 공동주택 12동(10~15층) 705세대(임대 1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7) 공람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 서대문구공고 제2006-27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6-38호 (2006.4.20)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률 제9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열람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열람공고로 같음

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서대문구청장

-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104-1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 칭 : 연희2동 104-1(공공공지) 사업
- 다. 사업규모 : 공공공지 - 면적 = 131.6㎡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3동 168-6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 부터 2년간
- 바.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 아.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 부터 20일간
- 자.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토목하수과 (본관 5층)
- 차.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토목하수과(전화 : 330-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연희2동 104-1 공공공지 사업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1	연희동 104-1	대	131.6	131.6	장광희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331 동작동 금강KCC [Ⓐ] 104-1504	(주)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숙명여대지점)	근저당권	
							노경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 대우드림타운 203-701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연희2동 104-1 공공공지 사업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1	연희동 104-1	건물 (1층)	세멘 벽돌조	43.69	노경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 대우드림타운 203-701	(주)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숙명여대지점)	근저당권	
		건물 (2층)	세멘 벽돌조	15	유현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52 반포 [Ⓐ] 104-305	(주)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숙명여대지점)	근저당권	
		건물 (지하1층)	세멘 벽돌조	43.54	김명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7 가야 [Ⓐ] 520-202	(주)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숙명여대지점)	근저당권	
		건물 (지하1층)	세멘 벽돌조	13.95	오점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88-27	(주)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숙명여대지점)	근저당권	

◆ 서초구공고 제2006-2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
를 위한 열람
서초동 1673-7호 공영주차장 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실시계획을 인
가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
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570-6264~7)에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3-7호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서초동 1673-7호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 라. 대지면적 : 864.30m²(261.45평)
마. 주차형태 : 자주식 주차장(지평식)
바. 주차대수 : 33대
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아.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자. 사용할 토지 : 서초동 1673-7호
(864.30m²)
차.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카. 열람장소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 570-6264~7)

사업소공고

◆ 양천소방서공고 제2006-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양 천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양천2006-3호
- 업 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상 호 : 승원전기 주식회사
- 대 표 자 : 박 명 호(740420-1*****)
- 법인번호 : 110111-1116155
-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목4동 730-6
- 등록일자 : 2006. 5. 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2653-6276)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6-15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구 로 소 방 서 장

- 등록일자 : 2006. 05. 04
- 등록번호 : 제구로2006-12호
- 업 종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상 호 :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지아이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서 양 동(600712-1*****)
남 해 식(591021-1*****)
- 영업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106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6-6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하였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행정처분 사 유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간	적 용 법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2-29 우리벤처타운 투 902호)	김승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영등포 2004-19호 2004.12.23)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미이행	영업정지 3월 (2006.05.01~ 2006.07.2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1호다목·제2호나목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6-20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송 파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종 (등급 및 분야)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송파 2006-6호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이두화 (110111-0956033)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00-2	2006.05.08
제송파 2006-7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주식회사 원우기계설비	국삼배 (110111-247181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4-8, 1층	